

사업환경 개선을 위한 SJC 건의사항

2009년 12월 14일

서울재판클럽

목 차

서 문	3
요 약	5
본 문	
1. 노동·노사관계 분야 (6 개 항목)	1 3
계속 6 개 항목	
2. 금융 분야 (10 개 항목)	2 4
신규 4 개 항목 / 계속 6 개 항목	
3. 세무·회계 분야 (3 개 항목)	3 3
신규 1 개 항목 / 계속 2 개 항목	
4. 지적재산권 분야 (17 개 항목)	3 6
신규 9 개 항목 / 계속 8 개 항목	
5. 개별 요망사항 (8 개 항목)	5 6
신규 5 개 항목 / 계속 3 개 항목	
6. 생활환경개선 분야 (1 개 항목)	6 6
신규 1 개 항목	
<u>합계 45 개 항목 (신규 20 개 항목, 계속 25 개 항목)</u>	

서 문

서울재팬클럽(SJC)은 1998 년 부터 한국정부에 대해 비즈니스 애로사항을 지적하고 개선해 주실 것을 건의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건의에 대해 한국정부가 진지하게 대응해 주시고 많은 개선조치를 강구해 주신 점을 SJC 를 대표하여 감사드립니다. SJC 는 지식경제부를 통해 관계부처에 건의 내용을 검토해 주시도록 요청 드리고 있으나 최근에는 기획재정부, 노동부, 국세청, 관세청, 특허청 등과 직접 연락할 수 있는 기회도 생겨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에 제 12 회 건의사항을 제출하오니 검토하신 후 신속한 답신을 부탁드립니다.

2008 년 가을부터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이 큰 바, 각국 모두 경기대책에 힘을 쏟아 그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마음을 놓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한국에서는 이명박 대통령 주도하에 비상경제체제를 구축하고 녹색성장, 수출확대, 고용대책 등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계십니다. 또한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내걸고 규제완화 추진과 동시에 외자기업에게 사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에 주력하고 계십니다.

대일관계를 보면 2008 년에 327 억 달러의 대일무역적자를 기록하였으며, 이 중 60%는 부품·소재에 의한 적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일무역적자를 개선하기 위해 한국정부는 일본에서 한국산 부품·소재 판매를 위한 전시·상담회를 개최하는 한편, 일본정부는 특정 2 개국 간의 무역수지만을 부각시켜 문제시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라 합니다만, 한국측 우려도 감안하여 2009 년 4 월에 한일부품·소재 조달 전시상담회(통칭:역건본시)를 개최하는 등 이 문제에 대해서 양국이 서로 개선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SJC 로서도 협조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한국정부는 부품소재전용공업단지를 지정하고 일본기업에 의한 투자 실현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일본기업 입장에서 볼 때 한국의 매력은 더 이상 저비용이 아닙니다. 기술력이 높고 일본어 능력이 뛰어난 인재, 잘 정비된 각종 인프라, 한국의 첨단기업과의 안정적 거래 등이 일본 기업이 생각하는 한국의 공통적 매력입니다. 앞으로도 일본기업의 대한 투자나 기진출 일본기업의 재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라도 SJC 가 건의하는 애로사항의 개선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SJC 는 예전부터 한일 FTA/EPA 의 조기실현을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습니다. 한일 FTA/EPA 협상은 2004 년 11 월을 마지막으로 중단되었으며 최근에는 실무협약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협상재개에 대한 전망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세계의 성장중심인 동아시아, 특히 한국, 일본, 중국을 포함한 ‘자유경제권’구축이 이 지역 발전에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민주당이 중심이 된 현정권은 FTA/EPA 의 중요성을 다시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한중일 FTA/EPA 에 대해 산관학공동연구검토회를 설치하여 검토해 나가기로 정상 간에서 합의된 바 있습니다. 우선은 현안인 한일 EPA 를 실현시키고 장차 한중일을 연결하는 FTA/EPA 가 기대되는 바입니다.

한국정부에 한일 EPA/FTA 협상 촉진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는 바입니다.

이번 건의에서는 노동·노사, 금융, 세무, 지적재산, 개별안전, 생활관련 등 총 45 항목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신규 안전이 20 건, 계속 안전이 25 건입니다. 건의에 앞서 SJC 전문위원회에서 글로벌 스탠더드 및 일본의 상황 등을 고려하고 한국의 현황을 충분히 분석하여 문제점을 발굴하여 건의사항을 작성하였습니다. 한국의 법률·제도 개정 상황을 충분히 파악했다고는 생각하나 만일 건의 내용이 이미 개정된 사항이라면 너그러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노사분야의 6 항목은 모두 계속 안전입니다. SJC 회원기업뿐만 아니라 많은 일본계 기업의 관심이 대단히 높으나 한국 노동조합과의 관계를 생각하면 해결이 결코 수월치 않은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노동문제의 진전 없이는 한국의 투자 환경이 개선되었다고 볼 수 없는 바, 각별한 검토를 부탁 드리는 바입니다.

금융분야, 세무분야 또한 전문적 사항이 많으나 모두 다 필수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지적재산분야는 가장 많은 17 항목입니다. 이번에 새롭게 일본술의 상표등록, 식물품종보호 등을 제안하였습니다. 지적재산권 문제에 관한 한국정부의 대응을 높이 평가하고 있으나, 지적재산보호를 통한 기업활동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보다 많은 제도의 개정·확충을 부탁드립니다.

개별안전에는 신약의 국제적 수준의 약가 설정, 국가산업단지 내 폐열을 이용한 농업사업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개별이라고는 하나 다른 기업에게도 관련된 공통 사항이라 생각됩니다.

2009 년 12 월

서울재팬클럽

이사장 아와야 쯔토무(粟谷 勉)

건의 사항 (요약)

노동·노사관계 분야 (계속 6개 항목)

1)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시 동의 의무 철폐 【계속 / 내용 변경】

한국에서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 노동조합 등의 동의를 얻도록 근로기준법에 의해 규정되어 있으나, 동의가 전제된다면 노사교섭에서 기업측이 일반적으로 불리하다. 기업이 세계경제 악화 등 기업경영 환경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제 94 조 제1 항에 있는 ‘불이익 변경 시 동의 의무’의 폐지를 요망한다.

2) 유급휴가 보상 금지 【계속 / 내용 변경】

근로기준법이 개정됨에 따라 미사용 유급휴가의 보상의무 면제 및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촉진 제도가 정해지고 일정조건 하에 사용자의 금전보상 의무가 면제되었다. 그러나 본 개정은 불이익 개정인 바 도입이 지지부진하고 유급휴가의 실제사용과 라이프 스타일 향상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작년 건의서에 대한 귀 정부의 답신에서는 ‘휴가사용 촉진조치는 근로자의 휴가사용 촉진만을 위한 것으로써 근로자의 연차휴가에 관한 기존의 근로조건 사항을 변경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다’고 하였으나, 본 답신은 ‘근로기준법 제 61 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촉진)가 동법 제5조(근로조건 준수)에 우선된다’고 이해해도 되는지 견해를 듣고자 한다. 또한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동법 제 61 조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우선될 수 있도록 법제도 정비를 검토해주시기 바란다.

3) 법정퇴직금제도의 개정 【계속 / 내용 추가】

한국에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으로 법정퇴직금제도가 규정되어 있어 횡령이나 부정 등 중대한 범죄 행위를 행하여 징계 해고된 직원에 대해서도 통상적인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퇴직사유가 징계 해고일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퇴직급여 지급의무 적용에서 제외하도록 변경’할 것을 요망한다. 또한 동법에 따르면 법정 최저기준 퇴직금이 높기 때문에 장기고용 종업원이 많은 일본계 기업 입장에서는 경영에 미치는 영향이 큰 바, ‘법정퇴직금의 산정 기초액을 통산고용기간의 평균 임금액 또는 이에 준하는 비교적 장기간의 평균 임금액으로 하는 방식으로 변경’할 것을 요망한다.

4) 비정규직 사용기간 제한 연장, 차별금지 완화 및 특정과건의 법제도화 【계속 / 내용 추가】

한국에서는 ‘비정규직보호법’ 시행에 따라 비정규직을 활용할 경우 ‘사용기간의 제한’ 및 ‘처우차별 금지’ 등 2 가지 측면에서 엄격한 제한이 있는 바, 계속해서 ①사용기간 제한의 연장 및 노사간 합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추가로 계약 연장이 가능한 법률 제정, ②비정규직 처우에 대해서는 노사간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개별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재검토해주시도록 요망해 왔던 바, 2008년 건의에 대해 귀 정부로부터 ‘법률 보안을 포함한 종합적 대책마련을 추진 중’이라는 답신을 받은 바,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해주시기 바란다.

또한 정규고용의 확대, 안정적인 일자리확보 및 고용의 유연성이라는 관점에서 ‘상용고용형 파견제도’의 도입을 요망한다

5) 사용자에 의한 노동조합 재정지원 금지 【계속 / 내용 변경】

본건과 관련하여 다른 선진국의 노동법은 이를 부당 노동행위로 금지하고 있으며 사용자에 대한 벌칙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노동조합 전임자의 급여지원 규정이 2009년 말까지 실시가 유예된 것은 기정 방침에 의한 것이라 함으로 이 점에 대해서는 부득이한 것으로 이해한다. 그러나 2010년 이후와 관련하여 본래의 입법취지에 맞는 합리적 운용에 관한 검토를 하는 노사관계발전위원회(노사정으로 구성)에서 논의된 내용 및 제도개선을 위한 입법내용에 대한 것 등,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해주시 바란다. 또한 복수노조가 허용될 경우,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는 제도 도입을 요망한다.

6) 국가유공자 고용의무의 탄력적 운용 【계속 / 내용 변경】

상시 20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은 일정비율 이상의 국가유공자 고용의무가 있으나, 국가유공자를 고용함에 있어 원하는 수준의 인재가 없는 등 결과적으로 기업경쟁력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 과거의 건의에 대해 귀 정부로부터 ‘어학능력이 있는 등 외국인투자기업이 필요로 하는 국가유공자를 알선하겠다’는 답신을 받았으나 구체적 대책이 제시되고 있지 않으므로 본 법률을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적용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망한다. 적용제외가 어려울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총 대상자 수와 미취업자 수, 국가유공자 고용의무를 가진 외국인투자기업 수 및 한국기업의 고용의무 수 및 실제고용 수의 정보를 공개해주시 바란다.

금융분야 (신규 4개 항목, 계속 6개 항목)

7) 금융실명 확인절차의 개선 【신규】

한국에서는 금융거래 시마다 면전에서 실명확인증표 원본으로 실명을 확인하고, 관련 실명확인증표 사본 등 실명확인에 필요한 관련서류를 첨부·보관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돈세탁 방지 업무지침에 따르면 고객별로 실명확인증표 등을 통해 고객의 본인정보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으며, 최초거래 시 고객확인을 한 경우에는 후일의 다른 거래에 대해 고객확인하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금융거래 시의 확인도 금융거래를 할 때마다 하지 않고 고객별로 본인확인을 함으로써 금융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을 요망한다.

8) 장외파생상품 영업 인가에 요구되는 시스템의 현지화 【신규】

현지법인의 경우 장외파생상품 영업인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머리(front)부터 허리(middle), 발끝(back)까지 모든 시스템의 현지화가 요구되고 있다. 이 요건은 글로벌 비즈니스를 전개하는 외국계 금융기관에게는 시스템 투자의 증대, 유지관리의 어려움, 비효율화를 강요당하는 것으로서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해서는 해외시스템의 공동 사용을 인정해줄 것을 요망한다.

9) 증권회사의 업무위탁에 관한 규제 【신규】

증권회사의 경우 의사결정을 수반하는 업무(준법감시(compliance), 내부감사(internal audit), 리스크 관리 등)는 외부에 업무위탁 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그러나 글로벌 비즈니스를 전개하는 외국계 금융기관에게 이러한 기능은 지역 매니지먼트 차원에서 관리되고 있어 한국 개별 차원에서 독립적으로 완결되는 것이 아니므로 대응에 고심하고 있다. 외국계 금융기관의 지역 매니지먼트 관리체제를 고려하여 유연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법개정을 요망한다.

10) '과생상품 투자상담사' 시험제도에 관한 개선 【신규】

한국에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0년 2월4일 이후에는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장외과생상품의 투자권유 등은 '과생상품 투자상담사' 시험에 합격하여 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된 자만이 가능해진다. '과생상품 투자상담사' 시험은 현재 한국어만으로 실시되고 있어 외국인 직원이 시험에 합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①외국어로 시험문제를 출제하여 외국인도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②해외 공적자격을 취득한 외국인 직원에게는 특례를 적용하여 한국 내에서도 장외과생상품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개선을 요망한다.

11) 국외지배주주 지불보증에 의한 국내차입 지급이자 손금처리 【계속】

지불보증만을 취득하여 국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상황에서는 실제 자금흐름은 국내에서 완결되므로 다른 국내자본의 동업종 타사가 행하는 국내조달과 완전히 동일하기 때문에 형평성에 어긋난다. 따라서 국외지배주주의 지불보증이 있더라도 국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동 주주의 출자지분의 3배(금융업은 6배)를 초과하여도 그 초과 분에 대한 지급이자 및 할인료는 손금산입 할 수 있도록 개선을 요망한다.

12) 금융기관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제 완화 【계속】

외국계은행 지점이 본점의 전산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을 업무위탁으로 간주하여 소정의 서류를 첨부한 후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되고 있으며, 이 밖에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운용을 함에 있어서 본점 소재국의 금융감독기관(일본의 경우 금융청)으로부터 NO OBJECTION LETTER 를 취득·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문서의 취득은 지극히 어려우므로 지점과 본점이 연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는 등의 대체 방안으로 완화해주시 바란다.

13) 유가증권보유제도의 외국 금융기관에 대한 탄력적 운용 【계속】

장기보유 유가증권과 관련하여 그 보유액을 일률적으로 자기자본의 60%를 상한으로 제한하고 외국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한국에 소재하는 지점단위의 자본금이 적용되므로 한국 금융기관에 비해 투자가능금액이 지극히 낮은 수준으로 억제되어 있다. 투자가로서의 신용능력은 금융기관 전체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외국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한국 내 지점단위의 자기자본이 아닌 금융기관 전체의 자기자본을 적용하도록 개선해주시 바란다.

14) 비거주자에 대한 한국 원화시장의 개방 【계속】

외환자유화를 위한 각종 규제완화에 따라 거주자에 대한 자유도가 급격히 확산되고 있으나 비거주자의 한국 원화시장 진입은 제한적이다. 한국에 대한 투자확대를 위해서도 비거주자에 대한 한국 원화시장의 조기개방을 계속해서 검토해주시 바란다.

15) 동일인 또는 동일 그룹에 대한 대출규제의 개선 【계속】

동일인 또는 동일 그룹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는 간주자기자본을 바탕으로 산정하는데 현재의 산정방법으로는 본·지점 대여금의 증가액이 간주자기자본에서 공제되는 등의 제약이 있다. 신용공여한도액의 산정방법에 대해서는 반입자본금이 아닌 본점의 자기자본액을 기준으로 하도록 개선해주시 바란다.

16) 중소기업 대출비율 규제의 철폐 【계속】

한국에서는 일정 비율 이상의 중소기업 대출이 의무화 되어 있다. 그러나 금융기관이 하는 용자는 용자대상의 리스크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금융기관이 컨트롤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다. 중소기업의 육성은 정부에 의한 정책용자 등으로 대응해야 할 과제이며 현재의 제도는 시장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

외국은행에 대한 중소기업 대출비율 규제의 철폐를 요망한다.

세무·회계 분야 (신규 1개 항목, 계속 2개 항목)

17)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비과세특례 적용기간 연장 요청 【계속 / 내용변경】

현재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①총 급여액의 30% 비과세(2009년 종료)후 일반 소득세의 과세체계를 적용하거나, ②총 급여액에 대해 15%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2가지 과세특례 가운데 선택적용 하는 것이 허용되고 있는데, 2009년 이후에는 개정되어 총 급여액의 30% 비과세제도(①)를 폐지하고 15% 단일세율제도(②)만 유지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총 급여의 30% 비과세제도의 부활 및 총 급여의 15% 단일세율 적용에 대한 유예기간(2012년까지)의 연장을 요망한다.

18) ‘중소기업’의 정의 변경에 따른 외국인투자가 자산총액을 한국통화로 환산할 경우의 기준환율을 개정 【계속 / 내용 변경】

한국에서는 자산총액 5,000 억원 이상의 대기업이 직간접을 포함하여 3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기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그 적용판단 기준통화가 원화로 되어 있어 일본에 소재하는 모회사의 경우 자산총액에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의 환율로 한국통화로 환산하기 때문에 환율 변동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외되는 경우가 발생하여 안정된 회사운영에 차질이 빚어지는 상황이다. 본 개정법 시행일인 2005년 12월 27일에 이미 영업을 하고 있는 외국인투자법인에 대해서는 개정법 시행일의 환율 또는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의 환율 가운데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을 요망한다. 또한 법 개정 후에 등기한 외국인투자법인에 대해서는 법인 등기일의 환율 또는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의 환율 가운데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을 요망한다.

19) 국외지배주주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적용 시 환율적용 규정의 정비 【신규】

한국에서는 국외지배주주의 지급이자에 대한 손금불산입 계산 시 외화차입금의 적수계산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기준환율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기간 내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일괄적으로 기말환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한 면이 있으므로 월평균 환율을 사용하는 등 보다 합리적인 운용의 개선을 요망한다.

지적재산권 분야 (신규 9개 항목, 계속 8개 항목)

20) 식물품종보호제도의 대상식물 확대에 대해 【신규】

‘아키히메(장희)’, ‘레드필(육보)’와 같이 일본에서 육성된 딸기품종이 육성자의 허락도 없이 한국에서 널리 재배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식물품종 보호제도의 대상이 아닌 딸기를 비롯한

모든 식물에 대해 UPOV 조약 이행기한인 2012 년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조기에 보호대상이 되도록 요망한다.

21) 한국인 시청자들을 위한 TV프로그램, 극장용 영화 라이선스 비즈니스의 과제 【신규】

여전히 일본 TV 프로그램을 지상파 방송에서 허용하고 있지 않는데, 일본 TV 프로그램에 대한 규제를 조속히 완화하여 시장을 개방해 줄 것을 요망한다. 또한 TV 프로그램 기획내용(프로그램 포맷)의 아이디어 도용이나 극장용 영화의 내용개편이 횡행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아이디어의 도용 방지, 내용개편 방지에 대한 지도를 요망한다.

22) 인터넷 상에서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책 개선 【신규】

자막이 삽입된 일본 TV 프로그램의 불법 업로드가 한국의 UGC 사이트에서 횡행하고 있는데 이를 신속히 제거할 수 있는 ‘비디오 지문인증 시스템’의 도입 추진을 요망한다. 또한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경고를 계속 무시하는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 접속정지 또는 이와 동등한 대응의 조치를 요망한다.

또한 일본의 저작권자도 통보를 통해 ‘저작권보호센터’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요망한다.

23) 특허출원 절차의 개선 【일부 계속】

한국의 특허출원 절차가 일본과 기타 선진국들의 절차에 비해 출원인에게 불편한 점이 있다. 따라서 다음 3 가지의 개선을 요망한다. ①거절이유 통지에 대한 응답의 지정기간을 3~4 개월간으로 함과 동시에 거절 결정에 대한 불복신청기간을 장기화한다, ②멀티의 멀티 클레임(다수종속청구) 표현을 인정한다, ③특허결정 후 일정기간 동안에도 분할이 가능토록 한다.

24) 특허법에 의한 컴퓨터 프로그램 자체의 보호 【계속】

기록매체에 기억된 컴퓨터 프로그램은 특허법의 보호대상인데 컴퓨터 프로그램 자체는 특허법의 보호대상이 아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을 포함한 발명의 모방이 매우 용이하다는 점에서 그 적절한 보호를 위해 실제로 시장에 유통되는 컴퓨터 프로그램 자체가 특허보호 대상임을 명확히 규정할 것을 요망한다.

25) 외국어출원 도입, PCT출원의 보정범위 확대에 대해 【계속】

외국어로 작성하여 한국 출원을 할 경우나 외국어로 PCT출원을 할 경우 번역에 오류가 있으면 현행 제도로는 본래의 의도가 충분히 전달되지 못하여 권리취득에 문제가 발생한다. 영어에 의한 외국어출원 도입을 요망한다. 또한 PCT 출원을 할 때 외국어 원문에 입각하여 절차의 보정이 가능하도록 해줄 것을 요망한다.

26) 의견서만 제출된 경우의 심사에 대해 【신규】

심사관의 의견제출 통지서에 대해 출원인이 발명을 보정하지 않고 심사관 판단에 대한 의견만을 제출한 경우에는 그대로 거절결정이 내려지는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 같다. 그 때문에 형식적으로 발명을 보정하는 실무가 정착되어 있는 실정이다. 의견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판단을 재고하는 심사가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요망한다.

27) 디자인등록 요건 및 상표등록 요건의 개선 【신규】

동일 출원인이라도 전체디자인을 출원한 후에 부분디자인이나 부품의 디자인을 출원하면 거

절되어 등록을 할 수가 없다. 마찬가지로 상표제도에서도 지금까지 개별적으로 상표등록을 소유하던 것을 하나로 통틀어 상표등록을 하고자 할 경우 새로이 광범위하게 또는 포괄적인 지정 상품으로 출원하면 동일 출원인일지라도 자사의 선행등록을 인용하여 거절된다.

이러한 경우, 동일 출원인에 의한 출원을 허용하기 위해 ①선출원 의장의 일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후출원의 부분의장 또는 부품의장에 대해서는 보호대상으로 하는 제도의 도입 및 ②출원인 자신이 소유한 선행 등록상표는 인용하지 않는 제도·운용으로 개선할 것을 요망한다.

28) 화면디자인의 보호 확충 【신규】

현행 화면디자인제도에서는 물품과 화상의 일체성이 요구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DVD 플레이어와 같은 물품은 TV 에 표시되는 조작화면 등의 화면디자인에 대해 보호를 받을 수가 없다(대상물품을 TV 로 할 수밖에 없다). 물품과 수상이 분리되어 있어도 물품의 일부로서 화면디자인을 보호하고 디자인권 취득이 가능하도록 화면디자인의 보호 확충을 요망한다.

29) 상표출원의 선후 출원에 관한 규정적용의 판단시기 【계속】

예를 들어 실제로 사용되지 않는 상표등록 A 의 존재를 모르고 동일한 상표를 제 3 자가 출원한 경우(출원 B), 당해 제 3 자에 의한 불사용취소심판에 의해 상표등록 A 의 취소가 확정되고 소급되어 소멸해도 출원 B 는 출원시점을 판단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거절된다. 따라서 상표등록 A 가 취소된 후에 재차 출원절차를 다시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법률적용의 판단시점을 현행 ‘출원시점’에서 ‘결정시점’으로 변경해주시기 바란다.

30) 일본술의 상표등록에 대해 【신규】

일본술에는 ‘긴쥬(吟釀)’나 ‘준마이(純米)’, ‘혼쥬조(本醸造)’ 등 일본정부가 정한 특정명칭이나 ‘조센(上撰)’ 등의 등급명칭이 있는데, 한국에는 이러한 명칭과 유사한 상표가 등록되어 있다. 또한 일본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일본술 브랜드가 일본에서 실제 제조·판매하는 자와 다른 제 3 자에 의해 상표등록이 되어 있다. 일본술의 상표심사·심판 실무에 있어 일본에 현재 존재하는 규칙이나 사실을 고려하여 운용이 이루어지도록 요망한다.

31) 무효심판의 청구인 적격제한 철폐 【계속】

등록공고 3 개월 이후에는 이해 관계인과 심사관만이 청구인 적격이며 누구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등록공고 3 개월 경과 이전에만 가능한데, 누구라도 기간제약 없이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익적 관점에서 필요하다.

32) 특허권 등의 유효·무효를 법원에서 판단하여 분쟁을 조기 해결 【계속】

특허권 침해소송이 지방법원 등에서 진행될 경우 피고가 대항수단으로 무효심판을 제기하여 대상특허의 유효성을 특허심판원(또는 특허법원)에서 다투는 경우가 많은데, 대상특허의 발명이 명백하게 무효일 경우 법원은 특허무효의 항변 및 특허권자의 권리남용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이해한다. 분쟁의 조기해결을 위해 이러한 운용을 제도상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33) 침해입증의 용이화 【계속】

지적재산권 침해소송에 있어 소송제기 전에는 증거수집 처분절차가 없어 소송상대 예정자로부터 정보나 증거를 입수하기가 지극히 어렵다. 그 때문에 기소 전에 법원관계자가 침해물품 등을 조사하여 어떠한 정보라도 취득할 수 있는 제도 등의 창설을 요망한다.

또한 소송심리중인 증거수집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을 포함하는 문서나 정보 등을 제출하도록 법원이 명령을 내림과 동시에 특별히 허용된 자만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영업비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절차제도를 정비할 것을 요망한다.

34) 간접침해 규정의 확충 【신규】

특허권 침해에 사용된 부품이나 재료를 침해자에게 공급하는 행위 등도 침해 행위가 되는데 (간접침해), 현행법에서는 그 대상을 전용부품(그 생산에만 사용하는 것)에 한정하고 있어 본 ‘~에만’의 요건이 엄격히 해석될 경우에는 구제가 어렵다. 지적재산권의 보호강화를 위해 악의를 가지고 부품을 공급하는 행위에 이르기까지 간접침해의 성립범위를 확대할 것을 요망한다.

35) 국제특허분쟁 지원사업의 운용 개선 【신규】

한국 특허청이 실시하고 있는 국제특허분쟁 지원사업은 국제특허분쟁에서 한국 특허청이 한국의 중소기업을 지원함으로써 외국기업과의 특허라이선스 협상에 한국정부가 개입하고 있다는 의혹이 발생할 여지가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한국에 등록된 지적재산권에 관한 특허분쟁에 대해서는 지원대상으로 선정하지 않고, 또한 라이선스 협상 컨설팅에는 특허청 직원이 참여하지 않는 등 한국 특허청이 관여하지 않도록 요망한다.

36) 모조품의 규제·단속 강화, 지적재산권에 대한 의식 제고 【계속】

모조품·해적판이 범람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 기업측은 그 대응을 위해 막대한 비용과 인적 부담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① 국경 조치가 적용되는 범위를 디자인권, 특허권 등으로 조기 확대, ② 2 차제품을 단속하는 관세당국의 강화. 국내외 제조업자·유통판매업자·소비자에 대해 2 차제품의 수입차단제도를 적극적으로 어필, ③한국에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해서도 지적재산 침해물품 감시를 강화, ④한국 특허청에 ‘특별사법경찰관’을 도입, 및 ⑤모조품 등 판매자의 철저한 적발과 성과 홍보 및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부교재를 조속히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지적재산권 마인드를 향상시키는 것 등을 요망한다.

개별 요망사항 (신규 5개 항목, 계속 3개 항목)

37) 신약의 국제적 수준 약가 설정 【신규】

한국의 신약가 시세는 선진 9 개국 평균치의 33%로 세계수준과 현저히 동떨어진 저가상황으로 약가 심사절차에서도 효과·안전성 등의 우수성이 감안되지 않고 경제성만이 초점이 되고 있다. 신약의 약가 설정을 할 때 선진 7 개국의 최저수준 정도를 목표치로 삼을 것을 요망한다.

38) 신약 승인·약가 수재기간의 대폭적 단축 【계속 / 내용변경】

약사와 약가의 불균형을 시정하고 신약을 환자에게 빨리 제공할 수 있도록 약가 수재심사기간의 대폭적인 단축과 적절한 약가 산정체제의 구축을 요망한다.

39) 안정인증 절차의 개선 【신규】

한국에서 EK(Electrical Appliances Safety Certification) 인증취득 절차는 타국에서 국제공통 규격에 따라 작성된 CB report 일 경우에는 대체하여 신청·허가가 이루어지는 규정이 있는데, KCC(Korea Communication Commission: 구 MIC) 인증의 경우 타국에서의 Test report 대체를 원칙

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 한국 인증기관에 재차 인증신청을 해야만 하는데 그 비용 및 시간이 기업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KCC 인증도 국제공통 규격에 의해 작성된 CB report 를 대체할 수 있는 절차규정의 개정을 요망한다.

40) 전기전자제품 대여계약 종료 시 회수운반에 대해 【신규】

한국에서는 전기전자제품을 렌트계약에 따라 대여하고 대여기간 종료 후에 해당제품을 회수·운반할 때에는 폐기물처리법에 따른 임시수집운반증을 발급받지 않으면 운반할 수가 없다. 대여제품의 회수행위는 폐기물 운반이 아니라 자기소유제품(유기물)의 운반에 해당하므로 임시수집운반증이 필요한 행위의 대상 외로 취급할 것을 요망한다.

41) 수입 중고 전기제품 안전검사에 대해 【신규】

한국에서는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에 해당하는 중고전기용품을 외국으로부터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한편 수입업자가 판매한 제품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애프터서비스를 할 능력이 없는 경우가 많아 수선책임을 제조메이커에게 강력히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따라서 중고전기용품 수입업자에 대해서도 A/S 를 담당할 능력이 있는 자에 한하여 안전검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의 개정을 요망한다.

42) 중소기업을 배려한 정부조달제도의 창설 【신규】

한국에서는 정부의 예산절감을 위해 조달청에 등록된 사무기기 제조회사를 대상으로 입찰경쟁을 실시하여 최저가액을 제시하는 회사로부터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자금력이 풍부하여 중소기업보다 최저가액을 제시할 수 있는 대기업이 낙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중소기업지원방안의 관점에서 과거에 한국정부가 해왔던 것처럼 경쟁입찰 시에 중소기업에 일정비율을 할당하는 제도의 창설을 요망한다.

43) 국가산업단지내 폐열을 이용한 농업사업의 추가 허가 【계속】

국가산업단지 내에 기진출한 기업이 폐열을 재이용한다는 관점에서 일정 조건 아래 농업사업(농수산물 제조판매 및 이에 관한 컨설팅)을 하는 것을 검토해주시기 바란다. 동 사업을 추가함으로써 국가산업단지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본래의 사업에서 발생한 폐열을 유효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44) 소량 연구개발용 화학물질 샘플 수입절차 확인방법의 개선 【계속 / 내용변경】

신규 화학물질 수입에 필요한 ‘신규 화학물질 유해성 심사의 면제 확인’절차에서 법령의 엄격한 준수, 신청작업의 신속화 및 확인내용의 확인을 위해 화학물질협회가 실시하는 확인결과 통지서에 확인된 수량을 표기할 것을 요망한다.

생활환경개선 분야 (신규 1 개 항목)

45) 생활환경 및 교통문제에 대한 개선 【신규】

쇼핑 카트의 위생관리, 오토바이 보도 주행 단속 강화 및 카운트 신호기의 추가 증설을 요망한다.

건의사항 (본문)

1. 노동·노사관계 분야

건 명	1.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시 동의의무 폐지 【계속 / 내용 변경】
현황/문제점	<p>한국에서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에는 노동조합 등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법률에 규정하고 있다.</p> <p>그러나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는 것은 매우 어려운 바, 기업경영 환경이 현저하게 변화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법개정 등 사회통념상 타당한 경우에도 노동조건의 하향 수정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불리하게 변경할 시 노동조합의 동의의무는 단기적으로는 근로자를 보호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정규직의 신규고용을 주저하게 하여 결과적으로 사회 전체의 고용규모 확대를 저해하는 하나의 요인이 되므로 근로자 전체의 이익으로 연결되지 않는다.</p>
개선요망	<p>2008 년도 건의에 대해 귀 정부는 ‘한국의 일부 판례(대법원 1978 년 9 월 12 일 선고)에서 유연한 판결을 내린 사례가 있다’, ‘사회통념상 합리성 유무에 대해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일본의 판례와 유사하다’고 하였으나, 일본에서는 원래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을 재판에서 다루는 사례가 적고 또한 일본계 기업은 특히 한국에서 노동관련 소송에 의한 REPUTATION RISK 를 회피하고자 소송을 한 사례가 드물기 때문에 한국 내 판례나 합리성 유무의 비교검토만으로는 그 실효성을 담보하기에 불충분하다.</p> <p>우리 건의의 취지는 글로벌경제의 악화에 따라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기업이 유연하게 대응하고 아울러 장기적으로 고용규모를 유지 확대 하는 것으로 이는 경제문제나 고용문제를 안고 있는 한국정부와 공통의 과제인식에 입각한 것이다. 금년 9 월에 발표된 세계경제포럼(WEF)에 의한 국가경쟁력 평가에 의하면 한국은 종합 19 위인데 비해 노동시장 효율화 부문에서는 84 위로 한국의 노동분야는 국제사회로부터 충분히 평가 받고 있는 수준이라고 할 수 없다.</p> <p>향후 취업규칙변경제도의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하였으나, 기업 입장에서는 취업규칙의 탄력적인 변경은 불가피하므로 <u>근로기준법 제 94 조 제 1 항(규칙작성, 변경절차)에 명기된 ‘불이익 변경 시 동의의무’의 폐지를 요망한다.</u></p>
관련기관/ 관련법령 등	<관련법령 등> 근로기준법 제 94 조 제 1 항
비 고	일본에서도 취업규칙 변경 시에는 노사간 교섭하는 것이 통례이지만, 반드시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노동기준법 제 90 조).

건 명	2. 유급휴가 보상 금지 【계속 / 내용 변경】
현황/문제점	<p>한국에서 2003년 8월에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법률상으로는 연차 유급휴가의 상한 설정, 월차 유급휴가의 폐지, 사용을 장려하여도 좀처럼 사용되지 않던 미사용 유급휴가의 보상의무 면제가 정해졌다. 또한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촉진제도’가 신설되어 정부는 근로자의 휴가사용을 촉진하고 있다. 이 제도에 의하면 사용자는 휴가사용기간이 종료되는 3개월 전에 근로자에게 잔존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하고 만일 근로자가 정해진 기간 중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 회사의 금전보상 의무가 면제된다.</p> <p>이것은 사업주에게 보상의무를 부담시키지 않는 것으로써 유급휴가의 실제 사용을 촉진하고 라이프 스타일을 개선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OECD 조사에 따르면 2007년 한국 근로자의 연간 근로시간은 OECD 가입국의 평균 1,770시간에 비해 2,316시간으로 전년 보다는 다소 줄었지만 가입국 가운데 유일하게 2,000시간을 초과하고 있다. 1일 8시간 일을 한다고 볼 때 가입국 평균보다 68일분이나 많은 격차가 벌어진다는 계산이 나온다.</p> <p>사업주는 정부가 추구하는 유급휴가 사용률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개정법이 적용되기 전에 구법에 의거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휴가보상에 대해 노동조합과 합의한 경우가 많다. 이미 유급휴가를 일종의 수입으로 여기고 있는 근로자 입장에서 수입감소로 이어지는 본 개정은 불이익개정이 되므로 노동조합 등의 동의를 얻기 어려워 도입이 지지부진하고 진척이 없다.</p> <p>작년 건의에 대해 귀 정부로부터 ‘연차휴가의 보상을 법령으로 금지하는 것은 근로기준의 최저기준을 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의 입법취지를 감안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는 답신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근로기준법 제 1조에 있는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취지와 관련하여서는 장시간 근로시간이란 측면으로 보아도 충족되었다고는 말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p>
개선요망	<p>2008년도 건의에 대해 귀 정부로부터 ‘휴가사용 촉진조치는 근로자의 휴가사용 촉진만을 위한 것으로써 근로자의 연차휴가에 관한 기존의 근로조건 사항을 변경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다’는 답신을 받았으나, 근로기준법 제 5조에는 ‘근로자와 사용자는 각자 단체협약·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지켜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기재되어 있어 다소 모순처럼 보인다.</p> <p><u>‘근로기준법 제 61 조는 제 5 조에 우선한다(휴가사용 촉진조치를 취하면 단체협약·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 유급휴가 보상이 언급되어 있어도 보상의무는 면제된다)고 이해하여도 맞는지 귀 정부의 견해를 듣고자 한다.’</u></p>

	<p>만일 귀측의 해석과 관련하여 제61조가 제5조에 우선되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조의 취지를 감안하여 동법 제61조가 개별 기업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우선되도록 개정하여 연간 총근로시간 단축을 촉진하는 법제도의 준비를 재차 검토해주시기 바란다.</p>
<p>관련기관/ 관련법령 등</p>	<p><관련법령 등> 근로기준법 1조, 5조, 61조, 94조 제1항</p>
<p>비 고</p>	<p>일본에서는 휴가 사용을 중시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에 ‘사용자는, ...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해야 한다’(노동기준법 제 39 조 제 1 항)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행정해석(1955년 11월30일 기수4718호)에서도 ‘법정일수 내의 유급휴가 보상’은 위법으로 되어 있다.</p> <p>유급휴가 사용이나 근로시간 단축이 이루어지지 않는 기업의 실태조사를 부탁하고자 한다. 귀 정부가 일본계 기업의 실태조사를 희망할 경우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p>

건 명	3. 법정퇴직금제도의 개정 【계속 / 내용 추가】
현황/문제점	<p>한국에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으로 법정퇴직금제도가 규정되어 있는데 <u>횡령, 부정, 중대한 과실</u>로 기업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나 중대한 범죄행위를 하여 징계해고된 직원에 대해서도 통상적인 퇴직금과 같은 금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기업은 종업원 이외에도 기업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이해관계자(고객이나 주주 등)에 대한 설명책임을 지고 있어 ‘사회·기업에 불이익을 끼친 직원에 대한 고객의 퇴직금 지급’에 대해 합리적인 설명책임을 다할 수가 없다. 특히 선진국의 외국인투자자에게는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내용이다.</p> <p>또한 장기고용 종업원이 많은 일본계 기업에게는 현재 법으로 보장된 포물러(공식)의 최저기준 퇴직금이 높다는 것과 그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비용 확정이 되지 않은 채 적립금이 늘어나고 있어 경영에 미치는 영향이 큰 실정이다. 향후 저출산 고령화가 진행되는 한국에서 고령자 고용을 위한 각종 조치(임금피크제, 정년연장 등)를 검토할 때 현행 퇴직금제도가 족쇄가 되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없는 상태이다.</p> <p>이렇게 획일적인 법정퇴직금제도를 부과하고 있는 다른 선진국을 찾아 보기 어려우며 투자대상국으로서 법제도가 정비되어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p> <p>서울재팬클럽의 회원기업들도 법정퇴직금제도의 향방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법정퇴직금제도를 발본적으로 개정하거나 더욱 합리적인 제도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이하의 (1), (2)에 대해 매우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기업이 많다.</p> <p>(1) 퇴직금 지급 시 퇴직사유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징계해고자에 대해서도 통상적 퇴직자와 같은 법정퇴직금이 보장되어 있음</p> <p>(2) 퇴직금 산정기초액으로 근로기준법의 평균임금액(최근 3 개월 평균임금)을 채택하고 있음</p>
개선요망	<p>상기 현황 및 문제의식을 감안하여 이하의 (1), (2)에 대한 법제도 정비 검토를 재차 바란다.</p> <p><u>(1) 퇴직사유에 따른 ‘징계해고자’에 대한 퇴직금지급 의무 적용 제외</u></p> <p>2008 년도 건의에 대해 귀 정부는 ‘퇴직금은 후불임금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노동의 대가로 볼 수 있으므로 퇴직사유에 따라 차등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회답하였다. 근로자 보호 측면에서 이러한 입장은 이해할 수 있지만 다른 한편 기업에는 고객이나 주주 등 종업원 이외의 이해관계자에 대한 설명책임도 있다. 특히 주주의 글로벌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설명책임은 경영상 가장 중요한 사항인데 반해, 현행법은 국제사회에서 이해를 얻기 어려우며 주주에 대한 설명책임을 다할 수가 없다. 이러한 배경도 고려한 후에 다시 한번 이하의 사항을 재검토해주시기 바란다.</p>

	<p><u>‘퇴직사유가 징계해고일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퇴직급여 지급의무 적용에서 제외하도록 변경한다’</u></p> <p>(2) 산정기초액의 재검토</p> <p>2008 년도 건의에 대해 귀 정부는 회신에서 ‘법정퇴직금의 최저기준은 과거 40 여 년 간 노사간 합의하에 한국의 법 정서로 정착된 것이다’라고 회답하였다.</p> <p>근로기준법이 제정된 1950 년대 당시 한국은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루고 1970 년대에는 CPI 도 전년대비 평균 15% 이상 성장한 시기였기 때문에 화폐가치가 급속히 하락하여 퇴직 시의 급여액을 산정기초로 삼아 계산할 필요가 있었던 점은 이해가 된다. 그러나 1980 년대 이후 전년대비 평균 성장률은 한자리 수로, 특히 2000 년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2~4% 정도의 추이를 보이고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그 당시에 제정된 법률은 현재 실상에 부합하지 않는 것도 사실이다.</p> <p>본건에 대해서는 ‘현행 퇴직금제도에 비해 유연한 인사관리 및 협력적 노사관계의 구축이 가능한 퇴직연금제도가 도입·시행되고 있다’는 답신을 받은 바 있다. 귀 정부가 시사하는 것처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한다면 기업측의 부담은 1 년 단위로 확정할 수 있게 되고 또한 고령자 고용을 위한 각종 조치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되나, 한편으로는 동 제도로 전환하려면 노사간의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2009 년 7 월말 현재 전환율은 불과 5.3%에 지나지 않고 일본계 기업도 여전히 기존(비퇴직연금형) 퇴직금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회사가 대부분인 점을 고려해 재차 이하의 사항을 검토해주시기 바란다.</p> <p><u>‘법정퇴직금의 산정기초액을 통산 고용기간의 평균임금액 또는 이에 준하는 비교적 장기간의 평균임금액으로 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u></p>
<p>관련기관/ 관련법령 등</p>	<p><관련법령 등> 근로기준법 제 34 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8 조 내지 제 11 조</p>
<p>비 고</p>	<p>(1)과 관련하여 일본의 판례에서는 징계해고가 유효하더라도 이에 더하여 퇴직금 지급취소(감액)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근속의 공적을 말소(격살)시켜버릴 정도로 현저한 신의 위반이 있을 경우에 한한다는 판례가 있으므로 한국에서도 이와 같이 취급함으로써 퇴직금 지급취소(감액)의 남용을 억제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p>

<p>건 명</p>	<p>4. 비정규직 사용기간 제한 연장, 차별금지 완화 및 특정파견 법제도화 【계속 / 내용 추가】</p>
<p>현황/문제점</p>	<p>‘비정규직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비정규직 이용 시 ‘사용기간의 제한’ 및 ‘처우차별의 금지’의 2 가지 면에서 엄격한 제한을 받게 되어, 주한 일본계 기업은 인건비가 증가하고 고용 유연성이 저하하게 되었다.</p> <p>주한 일본계 기업은 전체의 80%가 종업원 100 인 미만의 사업장으로 이 같은 중소기업에게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사원의 증원은 장래의 부담을 고려하면 신중해 지지 않을 수 없다.</p> <p>따라서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의 전환은 하루 아침에 이루어질 수 없는 바, 또한 기간제한으로 인해 비정규직과의 계약을 종료할 수 밖에 없는데 실제로 일본계 기업에서는 7 월 이후 서서히 계약종료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p> <p>이러한 상황은 정사원 고용확대를 지향하는 정부의 방침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또한 근로자의 근로의욕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정부·근로자·사용자 3자 모두에게 바람직한 환경이 아니다.</p> <p>또한 다른 나라에 비해 경쟁력이 낮은 고용환경으로는 향후 해외로부터의 추가적 투자나 그에 따른 신규고용 창출에도 큰 장벽이 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한국에 대한 투자실적이 큰 미국이나 일본으로부터의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경쟁력이 있는 고용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조건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p> <p>금년도 국회심의 전말을 보아도 본 안건은 관계 당사자가 많아 조정이 어려운 점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한편으로는 조속히 효과적인 수단을 강구하여 정부·근로자·사용자 3자 모두에게 바람직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한국경제를 위해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p>
<p>개선요망</p>	<p>2008년도 건의에 대해 귀 정부로부터 ‘비정규직 근로자가 직장에서 계속 일을 할 수 있도록 법률의 보완을 포함하는 종합적 대책마련(2009년 상반기)을 추진 중’ 이라는 답신을 받았으나, <u>‘종합적 대책’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해주기 바란다.</u></p> <p>또한 종합적 대책 가운데 이하의 항목이 포함되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금 이하의 2개 항목에 대한 검토를 통해 기업의 고용 유연성 확보를 긍정적으로 확인해주기 바란다.</p> <p>(1) 사용기간 제한의 연장 및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합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추가적 계약연장이 가능한 법률의 제정.</p> <p>(2) 비정규직 처우에 대해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개별 설정이 가능한 법률의 제정.</p>

	<p>또한 정부가 지향하는 정규직 고용의 확대, 근로자의 안정적인 직장의 확보 및 기업측이 추구하는 고용의 유연성 확보라는 3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방안으로 <u>상용고용형 파견제도(일본의 ‘특정파견제도’)의 도입을 제안하고자 한다.</u></p> <p>상용고용형 파견이란 파견송출 회사가 파견하는 사원을 정사원으로 고용하여 교육·육성한 후에 다른 회사로 파견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파견송출 기업의 정사원 고용이 전제되므로 파견대상 기업에 정사원 고용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없다. 또한 파견사원은 정사원으로서 파견송출 기업의 취업규칙에 따라야 하므로 이론상 비정규직보호법의 대상이 되지 않아 정부, 근로자, 사용자 3 자 모두에게 이점이 있는 제도라고 사료된다.</p> <p><u>‘특정파견제도’를 ‘비정규직보호법’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전제로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줄 것을 요망한다.</u></p>
<p>관련기관/ 관련법령 등</p>	<p><관련법령 등>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p>
<p>비 고</p>	<p>일본에서는 근로자 파견기간을 원칙적으로 3 년으로 하고 있으나 특히 전문성이 높은 26 개 업무의 파견기간은 무제한이다(노동자파견법 제40 조 제2 항).</p> <p>또한 일본의 특정근로자 파견사업은 전문적 분야(기계설계기사, CAD 오페레이터 등)를 중심으로 견실하게 자리잡아 가고 있으며 과거 5 년간 약 200%(인원수 기준) 성장하여, 현재 약 28 만명(2007 년 기준) 의 고용에 공헌하고 있다.</p>

건 명	5. 사용자에게 의한 노동조합 재정지원 금지 【계속 / 내용 변경】
현황/문제점	<p>사용자에게 의한 노동조합 재정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선진국가들의 노동법은 ‘부당 노동행위’로 금지하고 사용자측에 대해 벌칙규정이 정해져 있다. 벌칙규정이 정해진 이유로는 사용자측이 지원하여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기존의 노동조합을 배제하는 행위나, 복수조합 중에서 사용자측에 보다 우호적인 노동조합만을 재정지원 하여 그 세력의 신장을 도모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재정지원의 금지가 건전한 노사관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 대전제가 된다.</p> <p>한국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도 같은 취지의 규정이 정해져 있으나, ①노조전임자의 급여지원과 관련하여 동법 부칙에 의해 2009년 말까지 시행이 연기되어 있으며, ②기타 노동조합에 대한 재정지원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실상이다. 사용자측으로부터 급여지원·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조직이 각종 법제 및 실상 속에서 ‘노동조합’으로서 권리를 누리고 있는 현 상황은 건전한 노사관계 구축을 저해하는 커다란 요인이 되고 있다.</p> <p>또한 ‘1.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시 동의의무 철폐’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금년 세계경제포럼(WEF)의 국가경쟁력 평가에 있어 한국의 노동시장 효율성 및 노사간 협력은 다른 항목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순위였다. 이것은 노동관련 분야가 한국의 국제경쟁력에 족쇄임을 나타내는 하나의 결과라고 생각한다.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도 ‘노사간 협력’의 기초가 되는 노동조합의 건전성, 즉 ‘노동조합의 재정적 자립’에 대한 타협 없는 개선이 필요불가결 하다고 생각한다.</p> <p>한편 복수노조의 허용과 관련하여 노조전임자의 급여지원 금지와 함께 패키지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나, 시행 여부에 따라서 사용자측에 물리적·시간적 부담을 강요하게 되고 또한 노사협력의 현장에 불필요한 혼란을 낳을 가능성이 있다.</p>
개선요망	<p>2008 년도의 건의에 대해 귀 정부로부터 ‘분쟁기간 중의 급여지급 요구를 목적으로 하는 쟁의행위는, ... 경영자 스스로 무노동 무임금을 준수해야 한다’, ‘경영자 스스로 복무관리 강화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노사 모두 원칙을 준수하는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경영자측의 노력만을 언급한 견해가 있었으나, 애당초 ‘조합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 금지’ 규정조차 정부 차원의 시행이 3회에 걸쳐 12년이나 연기되어 온 경위를 고려하면 경영자측의 노력만으로는 개선되기 어려우며 재정지원 금지의 확실한 시행이 이루어짐으로써 비로소 기업도 원칙준수를 이행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p>

	<p>이러한 배경을 감안하여 <u>2009 년말 시행을 앞둔 ‘노동조합 전임자의 급여지원 규정’과 관련하여 재차 이하의 (1)~(3)에 대해 귀 정부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란다.</u></p> <p>(1) <u>노조전임자의 급여지급 금지 규정과 관련하여 2008 년 10 월 논의사항이 종료된 바 있는 노사관계발전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내용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주기 바란다.</u></p> <p>(2) <u>다음 사항에 대해 현시점의 노동부의 구체적 견해를 듣고자 한다.</u></p> <p>① <u>노조전임자의 급여지원 금지 규정과 관련하여 예를 들면 노동조합에 대한 재정지원을 없앤 만큼 임금인상으로 상쇄하는 등 실질적으로 재정지원을 하는 것과 같은 편법을 막기 위해 어떤 방안을 강구할 예정인가.</u></p> <p>② <u>마찬가지로 노조전임자의 급여지원 금지 규정과 관련하여 명목상은 회사업무를 보는 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조합업무만을 보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떠한 방안을 강구할 예정인가.</u></p> <p>③ <u>‘부당노동행위’는 근로자측이 제소하지 않는 이상 쟁점화되지 않는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2 조 제 4 항 나’의 엄격한 운용을 위해 어떤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가(예를 들면 지원조치를 받지 않고 있음을 확인하는 ‘노동조합’의 자격재심사 등).</u></p> <p>(3) <u>2010 년 이후 복수노조가 허용될 경우에는 사용자측의 물리적·시간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는 제도를 도입해 주기 바란다.</u></p>
<p>관련기관/ 관련법령 등</p>	<p><관련법령 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2 조제 4 항, 제 5 조, 제 24 조제 2 항 동법 부칙 제 5310 호 제 5 조 제 1 항 및 제 3 항, 제 6 조 제 1 항</p>
<p>비 고</p>	<p>일본의 법령도 ‘단체 운영을 위한 경비지출에 대해 사용자의 경리상 원조를 받는 자’는 노동조합으로 인정받지 못하며(노동조합법 제 2 조 제 2 호), 각 기업은 당연히 해당법령을 준수하고 있다.</p>

건 명	6. 국가유공자 고용의무의 탄력적 운용 【계속 / 내용 변경】
현황/문제점	<p>국가유공자 고용의무와 관련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30 조에 의해 상시 20 인 이상을 고용하는 일반사업장(제조업 사업장은 상시 200 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은 국가유공자를 근로자 수의 일정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p> <p>그리고 본 법률에 대해 2003 년부터 2007 년까지 5 회에 걸쳐 외국기업에 대해 탄력적으로 운용할 것을 제언을 해왔다. 이에 대해 ‘헌법에 정해져 있는 사항으로써 완화는 지극히 어렵다’는 답신만을 얻은 한편 2007 년의 건의에 대한 답신에서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알선할 경우에는 가급적 해당기업에 필요한 어학능력이 있는 자 등 외국인투자기업이 필요로 하는 국가유공자를 알선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한다’는 답신도 얻었다. 이에 2008 년에는 본건을 건의 대상에서 제외한 경위가 있다.</p> <p>그러나 실제로는 외국인투자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알선하는 구체적인 대응책은 보이지 않고 진출한 일본계 기업으로부터 이전과 마찬가지로 국가유공자의 고용의무가 한국투자의 커다란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보고가 접수되고 있다.</p> <p>외국인투자기업이 OECD 가입국인 한국에 투자할 경우, 인재 채용에 있어서 어학능력이나 전문성에서 고도의 수준을 필요로 하고 있는 바, 인건비가 투자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지극히 크다. 그 때문에 국가유공자를 고용할 때 요구하는 수준의 인재가 없을 경우 결과적으로 기업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져 장기적으로는 한국에 투자하는 의미가 퇴색되어 버리는 일이 우려된다.</p>
개선요망	<p><u>본 법률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적용 제외를 요망한다.</u></p> <p><u>적용 제외가 어려울 경우 본 법률의 고용의무 비율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이하의 3 가지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주시 바란다.</u></p> <p>(1) 현단계에서 파악된 국가유공자의 총 대상자 수와 미취업자 수 (2) 국가유공자 고용의무가 있는 한국기업 수/고용의무 수/실제고용 수 (3) 국가유공자 고용의무가 있는 외국인투자기업 수/고용의무 수/실제고용 수</p> <p>여기서 말하는 ‘한국기업’이란 ‘외국인투자기업’(외국계기업의 100% 자회사, 외국계기업이 과반수 주식을 보유하고 실질적인 경영권을 외국인이 지닌 회사, 외국계기업의 지사·지점) 이외의 모두를 포함한다.</p> <p>검증 결과 고용의무 비율과 국가유공자 대상자 수의 관계에서 본 법률 시행 시와 현재 상황에 괴리가 있을 경우 고용의무 비율의 하향</p>

	조정에 대해 검토해주시기 바란다. 또한 한국기업과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용비율 실태에 차이가 발견될 경우에도 외국인투자기업의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검토해주시기 바란다.
관련기관/ 관련법령 등	<관련법령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4 장 취업보호(제 28 조 내지 제 39 조)
비 고	

2. 금융 분야

건 명	7. 금융실명 확인절차의 개선 【신규】
현황/문제점	<p><금융실명거래> 한국에서 실명확인 절차는 금융거래 시마다 면전에서 실명확인증표 원본으로 실명을 확인하고, 관련 실명확인증표 사본 등 실명확인에 필요한 관련서류를 첨부·보관하도록 되어 있다. 예를 들면,</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정기예금 거래를 하는 거래처가 후일 보통예금 계좌를 개설할 때에는 정기예금 시와 동일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 기존 계좌와 동일 명의로 신규계좌를 개설할 경우 자금의 유출이 없는 정기예금의 만기연장에도 불구하고 법인의 대리인이 방문 시에는 그 때마다 면전에서 대리인의 실명을 확인하고 위임관련서류(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위임장)를 별도로 받아야 한다. <p>따라서 한국 내에 지점이 하나 밖에 없는 일본계 은행의 경우 원거리에 소재한 거래처에 대해서도 거래 시마다 면전에서 실명확인을 해야만 하는데 쌍방 모두에게 비즈니스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p> <p><돈세탁방지 업무지침 및 해설> 한편 한국의 돈세탁방지 업무지침 및 해설에서는 실명확인 은 금융거래 시 마다가 아닌 고객별로 실명확인증표 등을 통해 고객의 본인정보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으며, 최초거래 시 고객확인을 한 경우에는 후일의 다른 거래에 대해 고객확인은 하지 않아도 된다.</p>
개선요망	<p>(요망 1) 상기의 내용과 같이 실명확인 절차에 있어 금융거래도 돈세탁방지 업무지침에 맞추어 <u>금융거래 시 마다가 아닌 고객별로 본인확인을 함으로써 금융업무를 할 수 있도록</u> 개선을 요망한다.</p> <p>(요망 2, ※요망 1이 어려울 경우) (1) 법인에 대해서는 본인확인이 끝난 경우에는 법인 자체에 대해서만 ‘본인확인 완료’임을 확인하면 되고 담당자 개인(방문자, 대표자, 경리담당자 등)의 ‘본인확인을 완료했다는 확인’은 불필요 (2) 대리인의 본인확인 방법과 관련하여 본인확인이 끝난 거래처가 후일 다른 거래를 할 경우 본인확인은 이하의 방법에 의해 이미 본인확인이 끝난 개인 또는 법인과 동일함을 확인(본인확인 완료의 확인)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면식 있음(전에 본 적 있음)’에 따른 본인확인

	<p>② 신분증을 제시 받는 방법 ③ 통장, 증서, 인감서명 등을 제시 받는 방법 ④ 거래상황 기타 청취</p> <p>전표 등의 여백에 본인확인 완료의 확인을 한 담당자가 확인방법을 기입, 확인인 날인</p> <p>따라서 실제명의를 의한 금융거래 여부를 검증하는 금융실명거래법의 취지를 손상하지 않고 은행과 거래처의 업무 효율화를 도모한다.</p>
<p>관련기관/ 관련법령 등</p>	<p><관련기관> 기획재정부 <관련법령 등>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p>
<p>비 고</p>	<p>일본에서는 상기의 확인방법으로 업무를 하고 있음</p>

건 명	8. 장외파생상품 영업 인가에 요구되는 시스템의 현지화 【신규】
현황/문제점	현지법인의 경우 장외파생상품 영업인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머리(front)부터 허리(middle), 발끝(back)까지 모든 시스템의 현지화가 요구되고 있다. 이 요건은 글로벌 비즈니스를 전개하는 외국계 금융기관에게는 시스템 투자의 증대, 유지관리의 어려움, 비효율화를 강요당하는 것으로써 큰 부담이 되고 있다.
개선요망	<u>글로벌 차원에서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해서는 해외시스템의 공동사용을 인정해줄 것을 요망한다.</u>
관련기관/관련법령 등	<관련기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관련법령 등> ‘Regulation on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의 제 5-50 조(Risk Management of Derivative Transactions) 동 조항의 attachment 15 의 제 3 paragraph (Foreign Financial Institution, Korea Branch Standard)의 sub-paragraph 를 보면 외국금융기관의 지점과 관련하여 IT onshore 화의 완화가 인정되어 있는데 그 대상에 현지법인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완전한 IT onshore 화를 추구한다고 해석되고 있다.
비 고	

건 명	9. 증권회사의 업무위탁에 관한 규제 【신규】
현황/문제점	증권회사의 경우 의사결정을 수반하는 업무(준법감시(compliance), 내부감사(internal audit), 리스크 관리 등)는 외부에 업무위탁 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그러나 글로벌 비즈니스를 전개하는 외국계 금융기관에게 이러한 기능은 지역 매니지먼트 차원에서 관리되고 있어 한국 개별 차원에서 독립적으로 완결되는 것이 아니므로 대응에 고심하고 있다.
개선요망	<u>외국계 금융기관의 지역 매니지먼트 관리체제를 고려하여 유연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법개정을 요망한다.</u>
관련기관/관련법령 등	<관련기관> 기획재정부 <관련법령 등> FISCMA(금융 및 자본시장통합법) 제 45 조
비 고	

<p>건 명</p>	<p>10. ‘파생상품 투자상담사’ 시험제도에 관한 개선 【개선】</p>
<p>현황/문제점</p>	<p>2009년 2월 4일자로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0년 2월 4일 이후에는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장외파생상품의 투자권유나 투자상담은 ‘파생상품 투자상담사’ 시험 합격자로 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된 자만이 가능해진다.</p> <p>그러나 외국계 금융기관의 국내지점(일본계 은행 포함)에 근무하는 외국인 직원 가운데 자신의 본국이나 기타 해외에서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파생상품 투자상담사 자격을 가지고 투자권유나 투자상담 업무를 한 경력이 있는 직원이라도 상기의 법률에 의해 2010년 2월 4일 이후에는 한국에서 해당업무를 할 수가 없게 된다.</p> <p>‘파생상품 투자상담사’ 시험은 현재 한국어만으로 실시되고 있어 외국인 직원이 시험에 합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p> <p>장외파생상품의 투자권유나 투자상담 업무를 ‘파생상품 투자상담사’ 시험 합격자에게만 한정하지 않고 해외에서 공적 자격을 취득한 외국인 직원에게는 특례를 적용하여 한국 내에서도 장외파생상품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노하우를 누리고 시장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p>
<p>개선요망</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외국어로 시험문제를 출제하여 외국인도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한다(현재의 규정상 ‘파생상품 투자상담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과 관련하여 외국인에 대한 제한 없음).</u> 2. <u>외국에서 취득한 공적 자격 소지자에 대한 특례 인정</u>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상기 1의 체제가 정비될 때까지는 외국에서 취득한 공적 자격 소지자의 해당 업무경험 등을 기재한 특례인정 신청서를 해당 금융기관장(거점장)이 당국에 제출하고 당국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하는 ‘파생상품 투자상담사’로서 잠정적으로 인정한다. (2) 특례인정 신청서에 의해 인정받은 외국자격 소지자에 대해 한국에서 장외파생상품의 투자권유나 투자상담 시 필수적인 항목 가운데 해외자격으로 커버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당국이 연수프로그램을 계획하여 소정의 연수를 수료하거나 할 경우 국내 파생상품 투자상담사 자격에 준하도록 한다.
<p>관련기관/ 관련법령 등</p>	<p><관련기관> 금융감독원 <관련법령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p>

비 고	일본국내에서는 2009년 4월 1일부터 ‘금융상품거래법’에 근거한 특정 장외과생상품 판매와 관련하여 ‘과생상품 판매자격’(사내 자체자격) 취득과 일본증권업협회 주최 ‘제 1 중 외무원자격’의 취득 및 일본증권협회로의 등록이 필요.
--------	--

건 명	11. 국외지배주주 지불보증에 의한 국내차입 지급이자 손금처리 【계속】
현황/문제점	<p>내국법인의 차입금 가운데 국외지배주주로부터의 차입 및 동 주주의 지불보증에 의해 차입한 금액이 그 국외지배주주 출자지분의 3 배(금융업은 6 배)를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 분에 대한 지급이자 및 할인료는 배당 등으로 간주하여 손금으로 산입할 수가 없다.</p> <p>국외지배주주로부터의 차입이라면 지급이자 및 할인료의 지불이 국외에 대해 행해지기 때문에 과소자본세제의 적용은 이해가 되지만 단순히 지불보증만을 취득하여 국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는 실제 자금흐름은 국내에서 완결되므로 다른 국내자본의 동업종 타사의 국내 조달과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으로써 형평성에 매우 어긋나는 것이다.</p>
개선요망	국외지배주주의 지불보증이 있더라도 국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동 주주 출자지분의 3 배(금융업 6 배)를 초과하여도 그 초과 분에 대한 지급이자 및 할인료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한다.
관련기관/ 관련법령 등	<p><관련기관> 기획재정부 조세실 국제조세제도과 및 국제금융국 외환제도과</p> <p><관련법령 등>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제3장 제 14 조</p>
비 고	<p><일본의 사례에 대해></p> <p>한국과 마찬가지로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동 주주 출자지분의 3 배(금융업은 6 배)를 초과할 경우 그 초과 분에 대한 지급이자 및 할인료는 손금산입이 인정되지 않지만 국외지배주주의 지불보증으로 일본 국내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과소자본세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조세특별조치법 시행령 제 39 조 13)</p>

건 명	12. 금융기관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제 완화 【계속】
현황/문제점	<p>금융회사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한다는 취지 아래 2005년 7월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된 이후 업무위탁에 관한 사전·사후보고 절차가 명확해지는 등 관련 규정이 개선되었다. 관련 규정상 외국계은행 지점이 본점의 전산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을 업무위탁으로 간주하여 당해 규정상 필요서류를 첨부한 후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동 규정을 운용함에 있어 당해 본점 소재국의 금융감독기관(일본의 경우 금융청)으로부터 ‘한국의 금융당국이 당해 본점에 대해 감독·검사(*1)를 하는데 반대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이른바 NO OBJECTION LETTER를 취득하여 당국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p> <p>(*1) 수탁회사의 고객정보 비밀유지의무 준수 상황 등의 점검</p>
개선요망	<p>위탁실무를 진행하는 당사자 입장에서 이러한 서면을 상대국 금융당국으로부터 취득하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고객정보 비밀유지의무 준수에 대해 위탁자(지점)와 수탁자(본점)가 연대 서명한 서약서(*2)를 당사국 당국에 제출하는 등의 대체방안으로 완화해주시기 바란다.</p> <p>(*2) 예시: 고객정보 비밀유지의무 위반(목적 이외의 정보누출 등) 사례가 발생할 경우 위탁계약을 해약하는 등을 취지로 하는 문서)</p>
관련기관/관련법령 등	<p><관련기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관련법령 등>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p>
비 고	

건 명	13. 유가증권보유제도의 외국 금융기관에 대한 탄력적 운용 【계속】
현황/문제점	한국에서 은행법 제 38 조 및 은행법 시행령 제 21 조의 2 에 따르면 주식 및 장기보유 유가증권과 관련하여 그 보유한도액이 일률적으로 자기자본의 60%를 상한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동 한도금액의 산정근거로써 외국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본점의 자기자본이 아니라 한국에 소재하는 지점 단위의 자본금이 적용되므로 한국 금융기관에 비해 투자가능금액이 지극히 낮은 수준으로 억제되어 있는 상황이다.
개선요망	본래 투자가로서의 신용능력은 금융기관 전체로 판단되는 것이 타당하므로 <u>외국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한국에 소재하는 지점 단위의 자기자본이 아닌 금융기관 전체의 자기자본을 적용하도록 개선해주시기 바란다.</u>
관련기관/관련법령 등	<관련기관> 기획재정부 <관련법령 등> 은행법 제 38 조, 은행법 시행령 제 21 조 2 [은행법 제 38 조] 주식 및 상환기간 3 년을 초과하는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로 자기자본의 100 분의 100 범위 내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투자를 해서는 안 된다. [대통령령 제 21 조 2] 법 제 38 조 제 1 항 및 제 3 항에 있는 ‘대통령이 정하는 비율’이란 100 분의 60 을 말한다.
비 고	

건 명	14. 비거주자에 대한 한국 원화시장의 개방 【계속】
현황/문제점	한국에서는 2002 년 이후, 외환자유화를 위한 각종 규제의 단계적 완화에 의해 거주자에 대한 자유도가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비거주자의 한국 원화시장 진입은 한정적으로 밖에 인정되지 않는 상황이다.
개선요망	비거주자의 한국원화 외환거래는 외화를 한국 내로 송금하고, 한국 내의 인가된 금융기관하고만 할 수 있는데 <u>한국 내에서 비거주자간에 원화결제</u> 를 할 수 있도록 완화해주시기 바란다. 이에 따라 역외에서 외환거래가 가능해지고 해외투자자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사료된다.
관련기관/관련법령 등	<관련기관> 기획재정부 <관련법령 등> 외국환거래규정
비 고	

건 명	15. 동일인 또는 동일 그룹에 대한 대출규제의 개선 【계속】
현황/문제점	<p>한국에서는 동일인 및 동일 그룹에 대한 여신한도가 동일인에게는 자기자본의 20% 이내, 동일 그룹에게는 자기자본의 25% 이내로 규제되어 있다.</p> <p>이것은 한국 시중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기자본(납입자본)이 작은 외국은행 지점에게는 불리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 후 ‘본지점간 계약한 기간 1년 초과 차입금’은 자기자본에 산입하는 것이 인정되었다.</p> <p>한국에서 영업하는 외국은행은 ‘지점’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납입자본금이 소액이므로 신용공여한도가 낮게 설정되어 있어 대출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큰 장애가 되고 있다.</p> <p>이것을 보완하고자 2001년 7월 2일부터 ‘기간 1년 초과 본지점간 차입금(=외국에 소재하는 본점, 또는 해외지점으로부터의 차입금, 이른바 본지점간 중장기 차입) 가운데 한국 내에서 운용하고 있는 금액’이 간주자기자본에 산입되게 되었다.</p> <p>그러나 동 차입금에는 지점의 자본 총계를 기준으로 하는 상한이 있다. 또한 현재의 산정방법으로는 본지점간 대여금의 증가액이 간주자기자본에서 공제되는 등의 제약이 있으므로 충분한 조치라고는 말할 수 없다.</p>
개선요망	<u>규제 계산방법에 대해 납입자본금이 아닌 본점 자기자본액을 기준으로 하도록 요망한다.</u>
관련기관/관련법령 등	<p><관련기관> 기획재정부</p> <p><관련법령 등> 은행법 제 35 조, 은행법 시행령 제 26 조, 은행업감독규정 제 10 조</p>
비 고	

건 명	16. 중소기업 대출비율 규제의 철폐 【계속】
현황/문제점	<p>한국의 은행은 일정비율 이상의 중소기업 대출이 의무화 되어 있다 (86년 7월말 잔고를 기준으로 이후의 원화대출 증가분의 25% 이상을 중소기업에게 대출해야 한다).</p> <p>그러나 금융기관이 하는 용자는 용자대상의 리스크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금융기관이 리스크를 컨트롤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다.</p> <p>한국 중소기업 육성의 중요성은 이해하지만 중소기업의 육성은 본래 정부에 의한 중소기업 정책유자나 신용보증제도를 통한 정부의 재보증 등으로 대응해야 할 과제로써, 금융기관에 중소기업 대출비율규제를 적용하여 의무화하는 현재의 제도는 시장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p> <p>또한 중소기업에 대한 용자와 관련해서는 세심한 여신관리가 필요한데 점포 수나 인원 면에서 여신관리에 한계가 있는 외국은행에게는 실질적으로 불이익이 발생한다.</p> <p>국내은행과 외국은행이 동일하게 취급된 결과 외국은행에게 실질적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에는 형식적으로 같은 대우를 하기 보다는 실질적으로 동등한 부담이 되도록 하는 차등조치의 적용이 필요하다.</p>
개선요망	<u>외국은행에 대한 중소기업 대출비율 규제의 적용 철폐를 요망한다.</u>
관련기관/ 관련법령 등	<관련기관> 한국은행 <관련법령 등> 금융기관여신운용규정 제2조 제8호
비 고	

3. 세무·회계 분야

건 명	17.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비과세특례 적용기간 연장 요청 【계속】
현황/문제점	<p><현황> 현재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 절감을 위한 2가지 과세특례 가운데 선택적용을 허용 ①총 급여액의 30% 비과세(2009년 종료)후 일반소득세의 과세체계를 적용 ②총 급여액에 대해 15% 단일세율을 적용</p> <p><개정후> 외국인에 대한 과도한 지원 및 국내근로자와의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총 급여액의 30% 비과세제도(①)를 폐지하고 15% 단일세율제도(②)만 유지</p> <p>외국인의 소득세액 산정기초액은 급여소득 이외에 외국인이 한국에서 일하는 데 필요한 사택관련 비용, 외국인학교 교육비 보조, 의료비 보조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많은 바, 한국인에게 적용되는 개인소득세에 비해 과도한 우대나 차별이 아닌 적정수준이라고 생각된다. ‘급여 총액에 대한 15%의 단일세율’ 규정만을 남기는 것은 결국 부유층에 대한 우대조치만을 남기게 되는 것이다.</p> <p>또한 외국인 주재원의 경비가 증가하면 해외로부터의 투자의욕을 감퇴시키는 요인이 되어 현 정권이 내건 외국투자촉진의 저해요인이 늘어나게 된다.</p>
개선요망	<p>해당 비과세 규정이 폐지되면, 외국인근로자의 세액이 일제히 증가할 것으로 여겨지며, 이에 따라 외국인투자가의 예측가능성 저하로 인해 한국 국내의 외국인 투자심리가 위축될 것으로 우려된다.</p> <p>따라서 총 급여의 30% 비과세 조치의 부활을 요망함과 동시에 조세특례제한법 제 18 조의 2 제 2 항(총 급여의 15% 단일세율 적용)의 유예기간(2012년까지) 연장을 요망한다.</p>
관련기관/관련법령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 18 조
비 고	

건 명	18. ‘중소기업의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의 적합여부 판별 시 외국인투자가의 자산총액을 한국통화로 환산할 경우의 기준환율의 개정 【계속】
현황/문제점	<p>한국에서는 자산총액 5,000 억원 이상의 대기업이 직간접을 포함하여 3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기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그 적용판단 기준통화가 원화로 정해져 있어 일본에 소재하는 모 회사의 경우 자산총액에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의 환율 기준으로 한국통화로 환산하기 때문에 환율의 변동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되거나 제외되는 경우가 발생하여 안정된 회사운영에 차질이 빚어지는 상황이다.</p> <p>‘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제 1 호의 규정은 본래 주식 상장회사 및 협회등록법인으로서 자산총액이 5,000 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에게만 적용되어 온 바, 2005 년 12 월 27 일 시행된 개정에 따라 모든 법인에 적용되면서 해당 외국인투자 중소기업은 변동하는 환율 때문에 안정된 경영이 가능한 내국인 중소기업에 비해 끊임없이 불안정한 환경에서 경영을 해야 하는 불이익을 강요 받고 있다.</p>
개선요망	<p><u>1. 개정법 시행일인 2005년 12월 27일에 이미 영업을 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법인에 대해서는 개정법 시행일의 환율 또는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의 환율 가운데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u></p> <p><u>2. 법개정 후에 등기한 외국인투자법인에 대해서는 법인 등기일의 환율 또는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의 환율 가운데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u></p>
관련기관/ 관련법령 등	<p><관련기관> 중소기업청, 지식경제부 <관련법령 등>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p>
비 고	<p>일본, 중국, 대만 및 인도 등의 국가에는 이러한 법률이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미국에는 중소기업에 관한 명확한 해석이 없다.</p> <p>유럽 각국에는 법인체에 대한 감각이 달라 현황 파악이 불가능한 상태일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대기업의 구별에 관한 해석이 명확하지 않다.</p>

건 명	19. 국외지배주주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적용 시 환율적용 규정의 정비 【신규】
현황/문제점	<p>국외지배주주의 지급이자에 대한 손금불산입 계산 시, 외화차입금의 적수계산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기준환율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국조법 시행령 제24조 제4항)</p> <p>단, 국조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의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환율과 당일의 환율을 선택 적용 할 수 있도록 할 예정.</p>
개선요망	<p>사업연도 중에 외화차입금의 변동이 발생하여도 기말환율을 적용하여 적수를 계산해야 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바, 기간 내 변동이 있을 경우 일괄적으로 기말환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한 면이 있으므로 <u>일평균 환율을 사용하는 등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을 요망한다.</u></p>
관련기관/관련법령 등	<관련법령 등>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4 조 제 4 항
비 고	

4. 지적재산권분야

건 명	20. 식물품종보호제도의 대상식물 확대에 대해 【신규】
현황 / 문제점	<p>일본에서 육성된 딸기품종 「아키히메(장희)」, 「레드필(육보)」 과 같은 품종이 육성자의 허가를 얻지 않고 한국에서 널리 재배되고 있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으나, 현재의 한국의 식물품종보호제도에서 딸기는 보호대상식물이 아니므로 (※) 일본의 육성자는 한국에서 품종등록을 실시하여 육성자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p> <p>※ 한국은 UPOV91 년조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동 조약에 기초하여 2012 년까지 전 식물을 보호대상으로 하는 것이 의무화 되어 있으나, 딸기를 비롯한 5 식물(딸기, 나무딸기, 온주밀감, 블루베리, 황도)와 해초류가 2009년 9월 현재, 보호대상으로 되어 있지 않다.</p> <p>앞으로 한국 국내에서 일본의 우량 딸기품종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딸기를 조기에 보호대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p>
개선요망	식물품종보호제도의 대상이 아닌 딸기를 비롯한 전 식물에 대하여 <u>2012년을 기다리지 말고 조기에 보호대상으로 지정할 것을 요망한다.</u>
관련기관 / 관련법령 등	<p><관련기관> 농림수산식품부</p> <p><관련법령 등> 종자산업법</p>
비 고	일본의 식물품종보호제도에서는 모든 식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건 명	21. 한국의 시청자들을 위한 TV 프로그램, 극장용 영화에 대한 라이선스 비즈니스의 과제 【신규】
현황 / 문제점	<p>여전히 일본 TV 프로그램이 지상파 방송에서 배척되고 있다. 한국의 소프트가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시장을 석권할 실력을 갖추고 있으므로 한국도 평등하게 시장을 개방해야 할 것이다.</p> <p>TV 프로그램의 기획내용(프로그램 포맷)의 아이디어 도용이 횡행하고 있다.</p> <p>극장용 영화를 무단으로 중대한 개편(결말을 본래와 반대로 개편)하여 상영한 사례가 있었다.</p>
개선요망	<p>일본 프로그램의 규제를 조속히 완화하고 한국의 관할 부처가 중심이 되어 시장개방을 위해 가급적 신속하게 작업을 추진해 줄 것을 희망한다. 한일 정부기관은 이와 같은 사실을 재인식하고 시장 개방을 위해 작업을 개시해야 할 것이다.</p> <p>TV 프로그램 포맷의 아이디어 도용 방지에 대하여 한국정부로부터의 지도를 부탁한다.</p>
관련기관 / 관련법령 등	<p><관련기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문화위원회</p> <p><관련법령 등> 방송법</p>
비 고	

건 명	22. 인터넷상에서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책 개선 【신규】
현황 / 문제점	<p>한국의 UGC 사이트에 대한 저작권 침해 대책이 미흡하고 일본 프로그램에 자막을 삽입한 불법 업로드가 횡행하고 있다. 일본의 TV 방송국, 제작회사, 애니메이션회사 등은 저작권 침해로 큰 피해를 입고 있다.</p> <p>이와 같은 저작권 침해가 발생했을 경우 일본의 권리자가 침해했다는 주장을 해도 침해라고 주장한 URL의 파일만 삭제할 뿐 다시 또 동일한 콘텐츠가 업로드 되어 다람쥐 쳇바퀴 돌기가 되고 있다. 도가 지나칠 경우는 아예 저작권 침해 통지 자체를 무시 해버리는 경우도 있어 삭제 요청을 받아 드려지기까지 상당히 힘들다.</p> <p>저작권 침해 행위로 인해 반복적으로 받은 경고를 무시하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접속차단 또는 그와 동등한 대응을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지 않다.</p>
개선요망	<p>1. <u>비디오 지문 (finger print) 인증시스템 도입을 추진한다.</u> 사전에 비디오 지문 인증에 등록된 동영상이라면 파일이 업로드된 단계에서 인증하여 공개되기 전에 삭제가 가능하다. 거의 자동적으로 실시되고 사이트에서 사용되는 언어의 차이나 작품명을 변경했을 경우에도 유효하게 기능하여 저작권자가 사이트내에서 침해 파일을 찾아 다닐 필요가 없다. 현재 YouTube 을 비롯한 다수의 동영상 공유 사이트에서 도입을 완료하여 놀라운 효과를 거두고 있다.</p> <p>2. <u>저작권 침해 행위로 인해 반복적으로 받은 경고를 무시하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접속차단 또는 그와 동등한 대응을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 차원에서 실시한다.</u> 이 내용은 아쉽게도 작년의 한국 저작권법 개정에서 제외되었다. 다시 한번 포함시켜 주길 바란다.</p> <p>3. <u>일본의 저작권자도 한국의 감시기관에 통보함으로써 한국정부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요망한다.</u> 한국에서는 저작권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저작권보호센터를 2005 년에 설립하여 한국 국민은 감시기관에 저작권 침해를 간단하게 통보만 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고 들었다.</p>
관련기관 / 관련법령 등	<p><관련기관>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보호센터 <관련법령 등> 저작권법</p>

비 고	<p>Pandora TV (http://www.pandora.tv/) 라는 한국의 동영상 공유사이트은 일본에서의 접속이 전체의 78.2%에 이르고 있고 당사국인 한국에서의 접속은 16.9%로 큰 격차로 제치고 있다. 실제로 일본인을 위한 일본어 음성 또는 자막의 TV영화, 애니메이션의 콘텐츠로 구성되어 있어 Pandora TV의 접속상황은 일렉사(Alexa)의pandora.tv에 관한 아래의 URL : http://www.alexa.com/siteinfo/pandora.tv</p> <p>일본으로부터의 Pandora TV 접속방법은 크게 2가지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a. Pandora TV 의 메인 페이지에서 보고 싶은 작품을 검색 b. 링크사이트 (예 : http://dramaview.blog112.fc2.com/) 을 통해 시청 <p>현재 법적 규제는 없으며 사이트 운영회사에 대한 협력요청·부탁이라는 형식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잘 안 되고 있다. 법적규제가 가능한 것이 이상적이다.</p> <p>일본의 대표적인 UGC사이트인 ‘니코니코동영상’은 일본의 저작권단체의 요청을 받아 들여 자체적으로 투고를 감시하고 저작권 침해 동영상을 발견할 경우 삭제하고 있다.</p>
--------	--

건 명	23. 특허출원 절차의 개선 【일부계속】
현황 / 문제점	<p>(1) 거절이유통지에 대한 답변기간은 통상 2 개월이다. 또,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 신청 기간은 30 일간(기간연장이 인정된 경우는 추가 30일간) 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한국어 문헌을 인용한 사례인 경우 등은 인용례의 번역이 필요한 외국출원인에게는 이 지정기간 내의 대응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지정 기한을 연장하는 것은 가능하나, 연장할 때마다 연장 신청 절차가 필요하며, 연장료 및 고액의 대리인 수수료가 필요하다.</p> <p>(2) 다중 인용한 다른 종속항 등을 다중 인용하여 종속항을 기재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고 있다. 발명의 다면적 보호의 관점에서 이와 같은 종속형식도 인정되어야 한다.</p> <p>(3) 실효성 있는 권리를 취득하기 위해 출원인은 심사가 종료되고 특허결정을 받을 때까지 보호를 받고자 하는 발명을 특허청구의 범위에서 다면적 · 망라적으로 기재해 둘 필요가 있다. 그러나 심사관에 의한 최종 판단(결정)이나 이에 부수되는 선행 기술 조사결과가 제시되기 이전 단계에서는 어느 범위까지 광범위하게 권리화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출원인 스스로가 예측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한국에서는 거절결정 후 분할 출원을 인정하는 법개정이 2009 년 1 월에 실시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p> <p>출원인이 결정 이전에 상기의 권리 범위를 예측하기 어려운 것은 출원이 특허 결정된 경우도 마찬가지이며, 특허결정시의 특허청구 범위가 충분히 실효적이지 않은 경우가 있다. 특허 청구의 범위가 불충분한 채로 특허 결정된 출원에 대하여 현행 제도에서는 출원을 분할하여 더욱 명확한 특허 청구 범위에서의 권리화를 지향하는 방법이 없어 실효성 있는 다면적 · 망라적 권리취득이 어려운 상황이다.</p>
개선요망	<p>(1) <u>거절이유통지에 대한 답변 지정 기간을 3~4 개월로 하고, 나아가서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 신청(심판청구, 재심사청구) 기간을 장기화한다.</u></p> <p>한국특허청이 답변 기간을 장기화하게 되면 도입 검토중인 ‘등록 지연에 따른 특허권 존속 기간 연장 제도’에 대한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는 점은 잘 알고 있으나, 동일한 제도를 이미 도입하고 있는 미국에서도 거절 이유 통지에 대한 답변 기간은 원칙적으로 3 개월이다.</p>

	<p>또한, 지정 기간 장기화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를 들면 지정 기간 내에 답변이 없을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고, 나중에 거절 이유 통지에 답변할 경우에 필요한 절차와 연장료를 지불하는 등의 제도를 도입한다면, 출원인은 1개월마다 연장 신청을 할 필요가 없어지므로 이에 대해서도 검토를 요청한다.</p> <p>이와 같은 제도를 채택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절 이유 통지의 송달로부터 예를 들어 6개월 이내에 답변 또는 현실적으로 연장 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출원을 취소한 것으로 간주하는 등의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출원인에게 보낸 거절 이유 통지에 대한 답변 의사가 없는 출원이 대량으로 축적될 염려는 없을 것이다.</p> <p>(2) <u>멀티의 멀티 클레임(다수종속청구) 표현을 인정한다.</u> 한국특허청은 다중 인용한 다른 종속항의 다중 인용을 인정할 경우에 권리 범위의 이해가 어려워짐과 동시에 청구항의 개수에 따라 계산되는 각종 비용의 계산이 번잡해지는 점을 우려하고 있으나, 같은 클레임 표현을 인정하고 있는 일본 및 유럽에서는 큰 문제가 없다는 점을 덧붙여 둔다.</p> <p>(3) <u>특허 결정 후 일정 기간 동안에도 분할을 가능하게 한다</u> 거절 결정 후의 분할 출원을 인정한 2009년 1월 법개정을 일보 전진하여 특허 결정 후의 일정 기간 동안도 분할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로 한다.</p>
<p>관련기관 / 관련법령 등</p>	<p><관련기관> 특허청 <관련법령 등> 특허법 (2) 특허법시행령 제5조제6항</p>
<p>비 고</p>	<p>(1) 일본방식 심사 편람 04.10 (재외자인 경우 3개월, 신청에 의한 3개월 연장 가능), 미국 3개월, EPC 4개월, 중국 4개월, 대만 3개월 (2) 일본 및 유럽특허협력조약에서는 이와 같은 종속 형식의 클레임 표현을 인정하고 있다. (3) 일본에서는 같은 제도 개정을 2007년에 실시한 바 있으며, 이 제도 개정은 많은 출원인에게 호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일본특허법 44조1항)</p>

건 명	24. 특허법에 의한 컴퓨터 프로그램 자체의 보호 【계속】
현황 / 문제점	<p>컴퓨터관련 발명 심사 기준 2.2.1 에 의하면 기억 매체에 기억된 컴퓨터 프로그램은 특허법의 보호 대상이나, 컴퓨터 프로그램 자체는 특허법의 보호 대상이 아니다.</p> <p>그러나, 기억 매체에 기억된 컴퓨터 프로그램만을 보호 대상으로 하고 컴퓨터 프로그램 자체를 보호 대상으로 하지 않음으로써 아래와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컴퓨터 프로그램은 컴퓨터에 설치해야지만 실행이 가능하며, 사용자가 컴퓨터에 설치했을 때, 혹은 설치한 프로그램을 실행했을 때 비로서 특허권이 실시된다. 따라서 네트워크를 매개로 하여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자는 기억 매체에 컴퓨터 프로그램을 기억시키지 않기 때문에 침해 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으며, 직접 권리 행사를 할 수 없다. 2. 한편, 개개인 사용자에게 대해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또 특허권 침해는 생산·경영을 목적으로 행할 경우에 해당되므로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용자는 침해자가 되지 않는다.
개선요망	<p>컴퓨터 프로그램 자체를 특허법의 보호대상으로 할 것을 요망한다.</p> <p>컴퓨터 프로그램을 포함한 발명의 모방이 매우 쉽다는 점에서도 적절한 보호를 위하여 실제 시장에 유통되는 컴퓨터 프로그램 자체가 특허 보호 대상임을 명확히 규정해 주기 바란다.</p>
관련기관 / 관련법령 등	<p><관련기관> 특허청 <관련법령 등> 특허법</p>
비 고	<p>일본에서는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의 읽고 쓸 수 있는 기록 매체’와 함께 ‘프로그램 자체’가 특허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특허법, 심사 기준 등에 규정되어 있다.</p> <p>또, 대만에서도 2008년 5월 심사 기준 개정에 따라 프로그램 자체를 특허의 대상으로 하고, 영국에서도 2008년 2월부터 프로그램 자체를 특허 대상으로 하고 있다.</p>

건 명	25. 외국어출원 도입, PCT 출원의 보정범위 확대에 대해 【계속】
현황 / 문제점	<p>한국 특허청에 대한 출원은 한국어로 출원하도록 되어 있으며, 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항을 출원 후 보완수정에 의해 추가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또, PCT 국제특허출원의 경우도 한국 국내의 절차에 있어서 번역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내용을 국제 출원의 원문(외국어) 기재에 기초하여 보정하는 것은 인정되고 있지 않다.</p> <p>그러나, 외국에서의 출원(외국어)에 근거하여 한국 출원을 하는 경우, 한국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오역이 있을 때에는 외국어로 된 기재 내용에 기초하여 오역을 정정할 수 없고, 마찬가지로 PCT 출원의 경우도 외국어 원문으로 돌아가 보정할 수 없고 원문의 의도를 번역문에서 충분히 전달할 수 없는 경우도 있어 문제를 동반하며, 발명의 적절한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p>
개선요망	<p><u>외국어에 의한 특허 출원을 인정하고, PCT국제 특허 출원에 관하여 출원의 원문(외국어)에 기초하여 보정을 가능하게 한다.</u></p> <p>일본 등에서 도입된 외국어 서면 출원을 한국에서도 도입할 것을 요청한다. 모든 외국어 출원의 수용이 어려운 경우는 초기에는 영어 등의 일부 외국어로 한정하여 순차적으로 다른 외국어를 대상에 추가하는 것을 제안한다.</p> <p>또, 한국에서도 PCT 에 의한 국제 특허 출원에 관하여 절차 보정을 국제 특허 출원의 원문에 기초하여 가능하게 하는 것에 대하여 검토되기 바란다.</p> <p>또한 이들 개정에 대해서는 PLT 조약 및 SPLT 조약에 맞춘 특허법 개정시에 고려한다는 견해를 한국 특허청으로부터 들었으나, PLT 조약 및 SPLT 조약의 발효를 기다리지 말고 조기에 검토해 주기 바란다. 또, 외국어 서면 출원을 도입한 경우의 심사관의 부하 증대를 한국 특허청이 우려하고 있다고 들었으나, 이 점에 대해서는 PCT 에 의한 국제 출원이 한국의 국내 단계로 이행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외국어 출원된 출원의 심사에 대해서도 출원인으로부터 제출된 한국어 번역문을 기초로 하여 실시함으로써 큰 부담 증가는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p>
관련기관 / 관련법령 등	<p><관련기관> 특허청 <관련법령 등> 특허법</p>
비 고	<p>일본에서는 PCT국제 특허 출원의 원문으로 돌아가 보정을 실시하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인이 한국어로 국제 출원하여 일본에서 국내 이행한 특허 출원은 한국어 원문으로 돌아가 보정할 수 있다. 같은 제도는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채택되고 있다.</p> <p>일본 특허법 36조2, 184조12제2항 미국 37CFR 1.52(d), 대만특허법 25조, 태국특허법에 기초하여 성령 제21호12조2항, 인도네시아 특허법 30조2항</p>

건 명	26. 의견서만 제출된 경우의 심사에 대해 【신규】
현황 / 문제점	<p>특허출원 심사에 있어서 발명에 거절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심사관은 ‘의견 제출 통지’를 발행하여, 출원인에게 의견서를 제출하게 함과 동시에, 발명을 보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출원인이 발명을 보정하지 아니하고, 심사관의 판단에 대한 의견만을 제출한 경우에는 심사관의 판단을 재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거절 결정이 내려지는 비율이 매우 높은 것 같다.</p> <p>그러므로 출원인측에서는 발명을 보정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을 경우에도 형식적으로 발명을 보정하는 절차가 정착되어 있는 것이 실정이다.</p> <p>심사관이 한번 통지한 판단에 대해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심사관의 인사고과에 있어 마이너스로 작용할 수 있다는 소문도 있어, 출원인으로서 어쩔 수 없이 이러한 절차를 행하고 있다.</p>
개선요망	<p><u>의견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 판단을 재고하는 심사를 철저히 한다.</u></p> <p>‘의견 제출 통지’는 심사관이 스스로의 심증형성을 위한 자료를 얻고자 하는 수단이므로, 출원인이 제출한 의견서는 심사관의 심증형성을 위해 충분히 검토하고, 이전에 지적한 거절이유가 유지될 수 있는지 어떤지를 다시 한번 판단하도록 심사방침을 철저히 해 주기 바란다.</p>
관련기관 / 관련법령 등	<p><관련기관> 특허청 <관련법령 등> 특허법</p>
비 고	

건 명	27. 디자인 등록 요건 및 상표 등록 요건의 개선 【신규】
현황 / 문제점	<p><디자인> 한국에서는 동일 출원인이라도 전체 디자인을 출원한 후에 부분 디자인, 부품의 디자인을 출원하면 소위 확대된 선원에 의하여 거절되어 등록을 받을 수 없다.(디자인 보호법 제5조3항) 따라서 디자인 개발에 있어서 제품 전체, 각 부품 순서 대로 순차적으로 디자인이 결정되는 개발 실태에 맞추어 적시에 출원하는 것이 어렵다. 또한 최근 모방품 피해에 대한 증가를 배경으로 시장에서 성공한 제품 디자인의 독자성이 높은 부분만 모방하는 모방에 대항하기 위한 부분디자인 혹은 부품디자인의 의장권 취득이 전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2007년 시행된 개정법에 의하여 동일 출원인에 의한 후출원의 부분디자인, 부품의 디자인에 대해서 소위 확대된 선원에 의하여 거절되는 일이 없이 등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의장법 제3조의2), 이에 따라 일본에서 전체 디자인→부분 디자인(혹은 부품 디자인)의 순으로 출원하여 각각 우선권을 주장하고 한국에 출원하면 우선권 주장에 의하여 한국에서의 출원일도 전체 디자인→부분디자인(혹은 부품 디자인)의 순서가 되어 버리므로 후원의 부분 디자인(혹은 부품 디자인)이 거절된다는 문제가 발생한다.</p> <p><상표> 상품·역무 구분에서 국제 분류 재검토 등에 의하여 새로이 권리화가 가능한 지정상품이 추가되는 경우나, 지금까지 개별적으로 상표 등록을 소유하고 있던 것을 하나로 정리하여 상표 등록하고 싶은 경우에, 새로이 폭넓게 또는 포괄적인 지정 상품으로 출원하면 자사의 선행등록을 인용 당해 거절되어 버린다. 그 결과, 기업으로서는 관리하는 상표 등록의 건수가 늘어나고, 효율적인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며, 대단한 불편을 강요당하고 있다.</p>
개선요망	<p>디자인보호법 제5조 3항에 의한 디자인 등록 요건에 예외 규정을 마련 부분 디자인과 부품 디자인의 적절한 보호를 도모하여 우선권 주장에 기초한 부분 디자인 출원의 보호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동일 출원인에 의한 출원인 경우, 선원 디자인의 일부와 동일 또는 유사한, 후출원의 부분 디자인 혹은 부품 디자인에 대하여 보호 대상으로 하도록, 디자인보호법 제5조3항에 의한 디자인 등록 요건에 예외 규정(거절 대상에서 제외한다)를 창설하는 것을 희망한다.</p> <p><u>상표 등록 요건의 개선</u> 상기와 같은 경우에는 출원인 스스로가 소유하는 선행 등록은 인용하지 않는 제도 내지는 운용으로 개선해 주기를 바란다.</p>
관련기관 / 관련법령 등	<p><관련기관> 특허청 <관련법령 등> 디자인보호법, 상표법</p>
비 고	일본국 의장법 제3조의2

건 명	28. 화상 디자인의 보호확충 【신규】
현황 / 문제점	<p>한국의 현행 디자인보호법 제 2 조에 따른 화상디자인제도의 운용상황하에서는 「화상디자인이 물품에 일시적으로 구현되는 경우에도, 그 물품은 화상디자인을 표시한 상태로써 공업상 이용 가능한 의장으로 취급한다」라고 하며, 물품과 화상과의 일체성이 요구되고 있다. 그렇기에, 예를 들어 DVD 플레이어와 같은 물품의 경우, TV 또는 모니터 등에 조작내용이 구현된 화상디자인에 대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물품을 TV 또는 모니터 등으로 할 수 밖에 없게 되며, 현재로는 「화상디자인이 표시된 디스플레이」 등과 같이 물품을 비교적/포괄적인 형태로 특정해 출원할 수 밖에 없다.</p> <p>현재 정보기술의 발전에 따라 등장한 화상디자인은, 해당 물품에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사용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인 것이라도 디자인보호법 상, 보호되지 않는 것이 되므로 화상디자인을 해당 물품의 일부로 창작하여, 그 창작에 투자하고 있는 기업 등에 의한 제품개발 실정에 합치하지 않고 있다.</p>
개선요망	<p><u>화상디자인 보호 확충</u></p> <p>화상디자인의 출원에 대해, 물품과 수상기가 분리되어 있어도, 해당 물품의 일부로서 화상디자인을 보호하여, 디자인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화상디자인의 보호확충을 희망한다.</p>
관련기관 / 관련법령 등	<p><관련기관> 특허청 <관련법령 등> 디자인보호법</p>
비 고	<p>일본의장법 제2조제2항</p> <p>일본에서는 2007 년에 시행한 개정법 이후, 「물품이 그 본래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 경우, 그에 필요한 조작에 사용되는 화상 디자인에 대해, 물품의 부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것을 보호하는 것으로 한다. 」와 같이 화상디자인의 보호대상이 확대되어, 화상디자인을 인스톨한 DVD 플레이어와 같은 제품도 물품으로서 화상디자인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되었다.</p> <p>침해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일본에서는 DVD 플레이어 자체가 침해물품이 되는 것과 달리, 한국에서는 디스플레이가 침해대상이 되므로, DVD 플레이어 제조사에 대해서는 권리행사를 할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한다.</p>

건 명	29. 상표의 선후출원에 관한 규정 적용의 판단 시기에 대해 【계속】
현황 / 문제점	<p>상표 등록 A와 동일, 또는 유사 상표·지정 상품에 대하여 타인이 출원 B를 출원한 경우, A가 불사용이므로 불사용취소심판이 인정되어 B의 결정 시에 A가 소멸되었다 하더라도 현행 제도하에서는 B에 대하여 A를 인용한 거절 이유는 해소되지 않고 B는 거절되어 버린다.</p> <p>따라서 상기 예에서 제시한 B의 출원인이 그 상표에 대하여 상표 등록을 받고자 하는 경우는 상표법 8조 5항의 규정에 따라 인용된 A의 취소가 확정된 후에 다시 출원해야만 한다. 또, 한국을 지정한 국제등록 출원인 경우에는 새로운 국내 출원을 해야만 한다.</p> <p>본건에 관하여 금년 4월 30일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사건번호 2006헌바113,114)가 존재하고 있는 것을 주지하고 있다.</p>
개선요망	<p><u>결정 시를 기준으로 선후출원에 관한 판단을 실시한다.</u></p> <p>조기권리화 (등록)의 관점에서, 또 중복절차를 피하기 위해서도 결정시를 기준으로 선후출원에 관한 판단을 하도록 조기 법개정을 요청한다. 이에 따라 특허청의 방식심사 등에서의 부담 경감도 기대되며, 게다가 권리의 발생은 설정 등록으로부터이므로, 동일 또는 유사 상표의 중복 등록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더욱이 출원인으로서도 재출원비용이 절감되는 부차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p> <p>선등록 상표라는 유사 여부의 판단 시점을 후출원 결정 시라고 했을 경우, 선등록상표의 불사용취소 심판의 심리의 완급이나 심리보류에 의하여 후출원의 심사가 지연되는 우려가 있다. 그러나 현행법 하에서 재출원을 하는 경우라도 불사용취소판결 확정까지 재출원을 기다려야 하며, 실질적인 후출원의 심사 기간에는 변함이 없다. 그러나 출원시의 기준 하에서 이루어진 재출원은 어디까지나 신규 출원으로서 출원일이 설정되고, 그 결과 과거 자신의 출원에 의해 후출원이 된 제 3자의 유사상표 출원이 새로운 자신의 선출원이 되어 버리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p> <p>또, 출원시에 널리 알려진 상표가 후출원 등록 전에 주지성을 잃어버릴 경우, 법인의 해산 등을 통해 후출원 출원시에 존재했던 타인의 동일이름·명칭이 등록 시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판단 시기가 ‘출원시’라면 후출원의 등록을 거부해야만 한다. 이는 불필요한 이유로부터 사권을 제한하는 것과 다름없다. ‘결정 시’라면 공익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출원인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p>
관련기관 / 관련법령 등	<p><관련기관> 특허청</p> <p><관련법령 등> 상표법</p>
비 고	일본을 비롯해 구미 기타 많은 나라에서 상표등록 출원의 판단시기는 ‘결정시’이다(일본상표법 제4조3항)

건 명	30. 일본술의 상표등록에 대해 【신규】
현황 / 문제점	<p>吟醸(긴쥬), 「純米(준마이)」, 「本醸造(혼쥬조)」는, 일본국세청이 고지한 ‘청주의 제법 품질 표시 기준’에 있어, 특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 표시할 수 있는 「특정명칭」으로 정해져 있다. 또한, 「上撰(조센)」 등의 등급을 표시하는 명칭도 일본술의 품질을 표시하기 위해 널리 사용되고 있다. 한국에서는 이런 명칭과 유사한 상표가 등록되어 있어 문제이다.</p> <p>또한, 이미 일본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일본술의 명칭을, 한국에서 제 3 자가 무단으로 상표등록하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일본술을 구입하는 소비자는, 일본에서 유통되고 있는 일본술을 많이 인식해 상품을 식별할 것은 자명하므로, 오인/혼동 방지차원 및 부당한 권리행사 차원에서, 이러한 제 3 자에 의한 상표등록은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p>
개선요망	<p><u>일본술에 관한 상표등록의 운용개선</u></p> <p>일본국 정부가 정한 품질표시방법과 유사한 상표와, 일본에서 일반적으로 품질 및 등급을 표시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는 명칭과 유사한 상표를 등록하지 않도록 특허청의 운용개선을 희망한다.</p> <p>또한, 이미 일본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일본술의 명칭에 관해, 특허청의 심사와 심판(이의신청, 무효심판)에 있어서의 판단기준으로서, 일본술이 일본고유의 상품이라는 것을 고려해, 일본에서 이미 유통되고 있는 명칭의 경우에는 그것을 인용하여 제 3 자의 등록을 거부하도록 운용하는 것이, 일본술이란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과 합치한다. 일본에서 유통되고 있는 일본술의 명칭 또는 그 제조자의 일람은 제공할 용의가 있다.</p>
관련기관 / 관련법령 등	<p><관련기관> 특허청 <관련법령 등> 상표법</p>
비 고	

건 명	31. 무효심판의 청구인 적격 제한 철폐 【계속】
현황 / 문제점	<p>현재의 무효심판제도에서는 등록 공고일로부터 3 개월 이후에는 이해관계자와 심사관에게만 청구인 적격이 인정되며 누구든지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등록 공고일로부터 3 개월이 경과되기 전에만 가능하다. (특허법 133 조 1 항)</p> <p>그러나, 신규성 결여·진보성 결여 등의 공익적 이유에 관하여는 언제까지라도 누구든지 청구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공익적 관점에서 필요하다.</p>
개선요망	<p>시기적 제한이 없고, 누구든지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채택 본 요청사항에 대해서는 현행 제도 운용에서도 이해관계자의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는 설명을 한국 특허청으로부터 들었다.</p> <p>따라서 특허법을 그 운용에 맞추어 개정해도 무효심판의 청구 건수가 급증하여 특허권의 지위가 불안정해지리라 예상되지 않으며 오히려 심판이나 심결 취소 소송에서 청구인 적격이 쟁점이 될 소지가 없어지므로 법 개정에 의한 분쟁의 조기 해결도 기대된다.</p>
관련기관 / 관련법령 등	<p><관련기관> 특허청</p> <p><관련법령 등> 특허법</p>
비 고	<p>일본, 미국, 영국 등 각국에서도 특허 등록 후에 제 3 자가 특허의 무효를 청구하는 절차에 있어서 청구인의 적격을 이해관계자로 한정하지 않고 있다. (일본특허법 123 조)</p>

건 명	32. 특허권의 유효·무효를 법원에서 판단하여 분쟁의 조기해결 【계속】
현황 / 문제점	<p>특허권 침해소송에서는 피고가 대항수단으로서 무효 심판을 제기하고 대상 특허의 유효성(신규성·진보성 등)을 별도로 특허심판원, 더 나아가 특허법원에서 분쟁하는 경우가 많다.</p> <p>현 시점에서 특허권 침해소송에서 대상 특허발명이 명확히 신규성을 상실한 경우 등은 법원이 특허무효 항변 및 특허권자의 권리남용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은 운용은 제도 이용자로서는 분쟁의 조기해결을 위해 환영할만한 것이나, 제도상 이와 같은 운용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p>
개선요망	<p><u>특허권 등의 유효·무효를 법원에서 판단하여 분쟁을 조기 해결하는 제도의 도입</u></p> <p>특허 등에 관한 소송절차를 보다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일본, 미국, 영국 등과 같이 특허 등 침해소송에 있어서는 피고에 의하여 특허무효(또는 이와 동등한 효과가 있는 것)의 항변을 인정하고, 법원이 특허의 유효/무효와 침해의 유무를 동시에 판단해 주기 바란다.</p> <p>현시점에서 특허권 침해소송에서 대상 특허발명이 명확히 신규성을 상실한 경우 등은 법원이 특허무효 항변 및 특허권자의 권리남용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다. 분쟁의 조기해결을 위해 이를 일보 전진시켜, 예를 들어 특허법 중에는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당해 특허가 특허무효심판에 의해 무효가 되어야 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상대방에 대해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취지의 조항을 신설하여, 법원이 침해소송에서 대상권리의 유효·무효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할 것을 희망한다.</p> <p>작년도 건의에 대한 한국정부의 답신에 의하면 산업재산권의 무효 여부는 전문지식을 갖춘 특허심판원에 의한 심판으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분쟁해결 방법이라는 이유에서, 본 요청사항에 대해서는 수용이 곤란하다는 것이었다. 특허심판원에 의한 심판이 가장 정확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도 같은 생각이다. 그러나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해 특허법원에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심결 확정까지 장시간이 소요되며, 또 특허법 164 조 2 항에 의하여 그 동안의 소송절차가 중지되면 침해사건의 해결에 장기간을 필요로 하고, 특허법 등이 목적으로 하는 산업의 발전에 악영향을 미치는 점도 우려된다. 이에 대해서는 이들을 고려하시어 재검토 해주기 바란다.</p>
관련기관 / 관련법령 등	<p><관련기관> 특허청</p> <p><관련법령 등> 특허법</p>
비 고	일본특허법 104조의 3

건 명	33. 침해입증의 용이화 【계속】
현황 / 문제점	<p>지적재산권 침해 소송에서 소송 제기 이전에는 증거 수집의 처분 절차가 없다. 신속한 심리를 위해서는 소송 당초부터 가능한 한 많은 증거를 갖추는 것이 이상적이거나, 소송 제기 전에 소송 상대 예정자로부터 정보나 증거를 입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대단히 어렵다.</p> <p>또, 소송 상대의 공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제조 방법’이나 프로그램의 소스코드 등, 소송에서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포함된 영업 비밀의 보호가 문제시되는 경우도 많다.</p>
개선요망	<p><u>기소 전 및 소송 심리 중의 증거 수집에 대한 개선을 바란다.</u></p> <p>1. <u>기소 이전의 수집 방법에 대하여</u> 기소 이전의 증거 보전 이외에, 예를 들면 법원이 관리자의 신청을 받아 타당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법원 관계자가 ‘가’호 등을 조사하여 ‘가’호 특정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떠한 정보(예를 들면, 특허 클레임에 해석 없이 문언 상 포함될 수 있는 ‘가’호가 존재하는 등)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 등을 신설해 주기 바란다.</p> <p>이와 같은 제도는 일본에서는 민사소송법 132 조의 4 에 ‘소송 제기 이전의 증거 수집의 처분’으로써 규정되어 있다.</p> <p>2. <u>소송 심리중의 증거 수집에 대하여</u> 침해 입증, 손해액 입증을 위해 상대방이 소지하고 있는 문서, 정보 등이 필요한 경우가 많을 것이다. 이와 같은 문서(영업 비밀을 포함)를 법원에 제출하도록 법원이 당사자에게 명령하는 등의 제도를 바란다.</p> <p>또, 문서가 영업 비밀에 해당될 경우에는 특별히 허락된 자만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영업 비밀이 누설되지 않는 절차 제도를 정비해주기 바란다.</p> <p>또, 이 소송 심리 중의 증거 수집에 관한 요청에 대해서는 2007 년에 한국 국회에 제출된 특허법 개정법안 132 조, 224 조의 3~5 가 성립됨으로써 대부분 실현되는 것으로 생각되므로, 이 개정이 조기에 실시되기를 바란다.</p>
관련기관 / 관련법령 등	<p><관련기관> 특허청 <관련법령 등> 특허법</p>
비 고	일본특허법 105조, 일본민사소송법 132 조의 4

건 명	34. 간접 침해 규정의 확충 【신규】
현황 / 문제점	<p>현행법에서는 특허권 침해에 사용되는 부품과 재료를 침해자가 공급하는 예비적 행위 등을 침해행위에 포함하고 있으나, 대상을 전용부품(그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으로 한정하고 있다. 그렇기에, 「~에만」의 요건을 엄격히 해석할 경우, 간접침해 규정에 의한 구제가 어렵다.</p>
개선요망	<p><u>간접 침해 성립 범위의 확충</u></p> <p>지적재산권의 권리보호 강화의 관점에서 악의로(특허발명인 것 및 침해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 부품을 제공하는 행위까지 포함하여 간접 침해의 성립 범위를 확대해 주기 바란다.</p>
관련기관 / 관련법령 등	<p><관련기관> 특허청 <관련법령 등> 특허법</p>
비 고	<p>일본국특허법 101조 독일특허법 10조 미국특허법 271조(c)</p>

건 명	35. 국제특허분쟁 지원사업의 운용 개선 【신규】
현황 / 문제점	<p>중소기업의 건전한 발전·육성을 목표로, 한국 중소기업에 대한 한국특허청·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의 적절한 지원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의도 없다(일본에서도 경제산업성, 특허청, JETRO 등이 지적재산권 활용을 위한 어드바이저를 파견하여, 외국출원과 선행기술조사, 침해조사에 드는 비용을 보조하는 등,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p> <p>그러나, 3월 18일에 한국특허청/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가 공표한 '2009년도 국제특허 분쟁 지원 사업'은, 이 지원사업을 통해 한국특허청이 중소기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을 하는지 명확하지 않은 부분도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순전히 사기업간의 경제행위인 한국 중소기업과 외국기업과의 특허 라이선스 교섭에 한국정부가 개입하고 있다는 의심을 살 여지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p> <p>예를 들어, 한국특허청은 한국 산업재산권의 유효/무효를 판단하는 무효심판과 저촉·비저촉을 판단하는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소관하고 있으므로, 가령 외국기업으로부터 한국 산업재산권에 저촉된다는 침해경고를 받은 한국 중소기업의 라이선스 교섭이나 무효 주장을 위한 선행 기술 조사가 한국특허청이 동 지원사업을 통해 컨설팅 등을 행할 경우, 외국기업의 권리자는 자기의 산업재산권을 무효로 할 수 있는 권한과 한국 기업의 제품 등이 저촉되지 않다고 판단하는 권한을 갖는 한국특허청이 교섭 상대의 배후에 존재하는 것을 무시할 수 없게 된다. 이는 본래 평등한 입장에서 행해져야 할 당사자간의 라이선스 교섭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p>
개선요망	<p>상기 사업에서 지원대상 기업의 선정 및 구체적인 지원사업 실시에 있어, 위에서 언급한 염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운용해 주기 바란다.</p> <p>예를 들어, 지원대상 기업을 선정할 때에는 외국의 지적재산권에 저촉된다는 침해경고를 받은 중소기업일 것을 하나의 조건으로 하고, 한국의 지적재산권에 저촉된다는 침해경고를 받은 기업은 지원사업의 대상으로 선정하지 않기로 한다. 이 선정 조건을 공표하는 것이 위에서 언급한 염려를 해소하는데 효과적일 것이다.</p> <p>또한,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에 의하면 동 지원사업을 통해 기업간 경쟁행위에 한국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아니라는 견해로부터 지원사업의 하나인 전문가 풀(Pool)에 의한 라이선스 교섭 컨설팅의 경우, 한국특허청의 지원은 비용의 지원으로 한정시킬 것을 강조하고, 전문가 풀에 대한 한국특허청 직원의 불참, 전문가 풀의 구성 멤버를 제삼자 기관에 의해 선정해 컨설팅 내용에 한국특허청이 관여하지 않는 것도 우려를 해소하는 데 유효하다.</p>
관련기관 / 관련법령 등	<관련기관> 특허청
비 고	

건 명	36. 모조품의 규제·단속 강화, 지적재산권에 대한 의식 제고 【계속】
현황 / 문제점	<p>남대문시장, 동대문시장, 이태원 등 곳곳에서 거리낌없이 모조품(지적재산권침해품)이 판매되고 있는 현실이 계속되고 있다. 규제나 단속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소비자층의 의식도 아직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통관 보류요구권에 대해 특허권은 FTA 발표 2년 후에 디자인, 지리적 표시, 식물신품종은 교섭 발효 후 즉시 각각 확대하는 것이지만, 한 EU·FTA 협의에서 합의되었다고 들었다. 2. 상표권 침해 물품을 부분적으로 사용한 '2차 제품'의 수입 금지에 대하여 법개정 후 단속에 필요한 세관 체제가 충분히 정비되어 있지 않다. 3. 일본 세관에서 지적재산권침해품으로서 압수된 수입품들 중에 한국에서 수출된 것이 여전히 많이 있다. 4. 모조품의 진위 판정은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경우도 많아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경찰·검찰의 인재 확보나 능력 향상을 기다리기에는 너무 늦다. 5. 사회 전체로서 불법 복제나 모조품에 대하여 위법 의식이 적고, 또 조악한 모조품에 의한 건강 침해가 발생하는 등의 악영향을 모르는 국민이 많다. 지금까지 한국 정부는 소비자 단체에 의한 '모조상품 감시단' 결성을 유도하고 공공의 장소에서 홍보에 노력했던 실적은 높이 평가한다.
개선요망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통관금지조치가 적용되는 범위를 디자인권, 특허권 등으로 조기에 확대</u> 통관보류요구권의 대상을 특허권 등의 주요 지적재산권으로 확대한 제도의 조기 실현을 희망한다. 2. <u>2차 제품을 단속하는 관세 진용의 강화. 국내외의 제조업자·유통업자·소비자에 대해 2차 제품의 수입금지제도를 적극적으로 어필한다.</u> 2차 제품의 수입 금지 실적을 쌓아 미국·일본에 이어 2차 제품의 수입금지가 가능한 국가가 된 것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여 위법 행위를 억제한다. 3. <u>한국에서 수출되는 물품에 대해서도 지적재산 침해품의 감시를 강화한다.</u> 4. <u>한국특허청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도입한다.</u>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지적재산권 위반 물품을 단속하기 위해 전문 지식을 가진 특허청 직원이 검사의 지휘 하에 직접 압수·수색·구속신청 등의 조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 5. <u>모조품 등 판매자의 철저한 적발과 국민에 대한 정보 발신, 교자재의 조기 작성.</u> ① 국민의 눈에 띄는 시장의 '모조품'이나 그 '판매자'를 적발하고 소탕시킬 것 ② 위법 행위 근절에 임하는 정부의 선진적인 자세나 모조품에 의한 위험이나 건강 피해 등의 실태를 TV 등으로 국민에게 직접 전달할 것. 나아가 ③ 초중학생 등에게 제공 가능한 교자재를 조기에 작성하는 것은 한국 국민의 지적재산 의식을 제고시키는 유효한 수단이 될 것이다.

<p>관련기관 / 관련법령 등</p>	<p><관련기관> 기획재정부, 특허청 <관련법령 등> 관세법</p>
<p>비 고</p>	<p>1. 일본에서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저작권, 저작인접권, 회선배치이용권, 및 품종보호권 등 주요 지적재산권이 모두 통관금지조치가 가능하다.(일본관세법 69 조의 11 제 9 항. 참고: 한국관세법 235 조)</p> <p>4. 한국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위법 소프트웨어의 단속), 관세청(관세법의 단속) 등 18 부처 28 분야에서 사법경찰권이 인정되고 있다. 지적재산분야의 중요성을 감안해 특허청을 인정 대상으로 하는 것에도 신속히 착수해야 한다. (일본에는 같은 제도는 없다)</p> <p>5. 일본에서는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이나 모조품의 피해를 주지시키기 위해 TV CF, 포스터, 신문, 잡지, 배너 광고 등을 활용한 ‘모조품·해적판 근절캠페인’을 매년 실시하고 있다. 또, 지적재산을 존중하는 의식을 학교 교육 단계에서부터 양성하기 위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각각에 맞추어 지적재산교육용 부독본을 작성하여 희망하는 학교에 무상으로 배포하고 있다.</p>

5. 개별요망사항

건 명	37. 신약의 국제적 수준의로의 약가 설정 【신규】
현황 / 문제점	<p>현재 신약의 약가 취득에 관해서는 우선 HIRA (※1) 에서 동종동효품(同種同效品)인 제네릭을 포함한 가중 평균치가 상한 가격이 되는데다 별도 제출하는 경제성 평가 자료(작성비용에 1 억 원 정도 필요)가 검증되어, 그것이 인정된다면 보험 상환 대상으로서 NHIC (※2) 로 보내진다. NHIC에서는 HIRA에서 승인된 가격에서 더욱 가격을 인하하여 결과적으로는 HIRA 인지 가격의 20~30%에서 협상이 되는 실정이다. KFDA (※3) 에서는 기존약에 대한 효과 및 안전성에서 우수성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승인될 수 없는 것에 비해, 약가 심사 측면에서는 그 우수성을 일절 인정하지 않고 경제성만 심의되고 있다.</p> <p>이렇다 보니 신약 개발에 대한 막대한 투자가 일절 인정되지 않게 되어 일부 신약은 한국 내 시판을 연기하고 있다. 또, 한국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로컬 메이커로의 신약 개발 촉진도 그 의욕이 꺾일 것은 자명한 이치일 것이다.</p> <p>HIRA 로 제네릭을 포함한 가중 평균치가 상한 가격이 되는 점도 쉽게 납득이 가지 않으며, 무엇보다도 NHIC 에서의 가격 인하에 대해서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불투명하다. 예를 들면, 같은 적응증을 가진다는 이유만으로 전혀 작용 메커니즘이 다른 수십년 전에 승인된 약제의 약가를 신약의 비교 대조 약가로써 NHIC 가 제시하는 등, 의도적으로 약가를 억제하기 위한 교섭을 실시하고 있다고 생각된다.</p> <p>게다가 요즘의 원화약세에 의해 한국의 신약가 시세는 선진 9 개국 평균치의 33%로 세계 수준과 동떨어진 저렴한 상황이다.</p> <p>한편, 2005 년 3 월에 출범한 대통령자문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가 정한 ‘의약품 산업 발전 방침’에서는 2015 년까지 세계 7 위인 의약품 시장국을 만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으며, 이는 확실히 한국 의약품 산업의 글로벌화 선언이라고 이해된다.</p> <p>그와 같은 방침이라면 글로벌 스탠더드에 기초해서 국제적으로도 받아들여질 수 있는 신약의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즉, 더 좋은 약제(신약)에 대해서는 적절한 약가를 매겨야 하며, 나아가서는 ‘의약품 산업 발전 방침’에 기초한 의약품 산업의 발전으로 이어질 것이다.</p> <p>※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 ※2. 건강보험공단 :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3. 식품의약품안전청 : Kore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p>

개선요망	<p>신약 약가에 대해서는 국제 수준의 설정이 이루어지도록 개선을 당부하고자 한다. 적어도 선진 7 개국(일본·미국·영국·프랑스·독일·스위스·이탈리아) 의 최저치 수준 정도를 목표치로 해주기 바란다.</p>
관련기관 / 관련법령 등	<p><관련법령 등> 국민건강보험법 「신의료기술 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 (보건복지가족부공시)</p>
비 고	

건 명	38. 신약 승인·약가 수재 심사 기간의 대폭적 단축 【계속】
현황 / 문제점	<p>한국 정부의 약사 담당 기관인 KFDA(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국제 공동 임상시험을 추진하고 있으며, 일본보다도 앞서는 면도 많다. 그러나, 약가에 있어서는 HIRA (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한 의료경제평가 (Health Technology Assessment=HTA) 후에 NHIC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건강보험공단) 과의 약가 교섭이 있고, 약가 취득에 시간이 걸리는 데다가 적정 약가의 취득이 어려운 상황이다.</p> <p>한국의 건강보험재정은 2006년 이후 적자 상태이며, 재정 사정은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07년 1월의 HTA 도입과 파지티브 리스트(positive list) 실시를 비롯해 ‘약제비 합리화 계획’에 따른 다양한 약제비 억제책이 실시되고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1999년에 실시된 실구입가 상환제도에 따른 약가 차이의 축소와 약가 인하 ② 선진7개국의 평균 약가를 기초로 3년마다 약가 재산정을 실시 ③특히 만료시에 오리지날품의 약가를 20% 가격 인하 ④ 초년도 매출이 예상 매출액을 30%이상 상회한 경우에는 약가를 인하하는 가격 수량 협정을 제안 <p>파지티브 시스템(Positive System) 이후의 상환리스트 수재상황은 별첨과 같이 KFDA에서 허가된 41품목 가운데 14 품목(34.1%)가 비급여 혹은 교섭이 결렬되었다. 더욱이 HIRA에서 수재가 인정된 31품목 가운데 NHC와의 교섭에 있어서도 8품목(25.8%)가 결렬되었고, 최종적으로 약가 수재된 것은 23품목에 그치는 억제책이 단행되어 결국 KFDA에서 효과·안전성이 인정된 약제라도 모든 과정을 통과할 수 있었던 약제는 56.1%이다.</p> <p>HIRA에서의 교섭을 거친 후, 다시 한번 NHIC에서 교섭을 실시하는 작업은 결과적으로 ‘리스트 리그’현상이 일어나고 있다.</p> <p>또, KFDA의 허가부터 약가 수재까지의 평균 기간은 13.9개월이며, 이와 같이 약가로 1년 가까이 HIRA와NHIC와 협상을 한다면 신약이 환자의 손에 도달하는 것이 지연된다. 이러한 열악한 약사 제도 및 약가 제도의 상황하에서는 장차 한국에서의 국제 공동 임상시험 수는 감소할 것으로 우려되며, 규제와 투자가 불균형한 상태이다.</p>

<p>개선요망</p>	<p>약가 수재 심사 기간의 대폭적인 단축과 적정한 약가 산정 체제의 구축을 절실히 바란다.</p> <p>약가담당당국인 HIRA 및 NHIC가 아니라, 높은 수준의 견지(보건복지가족부)에서 약사와 약가의 불균형 문제를 시정하고 신약이 빨리 환자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란다. 또, 보건복지가족부는 건강보험재정에만 주목할 것이 아니라 매우 중요한 사명인 국민의 건강복지 향상을 완수해 주기 바란다.</p> <p>작년도 건의에 대한 한국 정부의 답신에서는 ‘허가신청으로부터 보험약가 등재까지의 기간을 본다면 일본과 한국에 큰 차이가 없다’는 의견이 있었다.</p> <p>(일본) 허가 : 360 일 약가 : 60~90 일 합계 : 420~450 일 (한국) 허가 : 120 일 약가 : 230~410 일 합계 : 350~530 일</p> <p>그러나 실제 상황을 감안한다면 한국에서 2007 년 1 월 이후의 약가 신청 기간은 13.9 개월이며, 약가 신청만으로 400 일을 넘기고 있다. <u>약재의 안전성과 유효성 심사에 시간을 요하는 것은 이해하나, KFDA에서 약재로써의 유용성이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약재의 경제성을 검토하기 위해 1 년 이상의 기간을 필요로 하고, 약가가 확정되지 않기 때문에 환자들에게 신약이 도달하지 못하는 상황은 조속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u></p>
<p>관련기관 / 관련법령 등</p>	<p><관련법령 등> 국민건강보험법 「신의료기술등의 결정·조정」 (보건복지가족부 공시)</p>
<p>비 고</p>	

건 명	39. 안전인증 (MIC인증) 절차의 개선 【신규】
현황 / 문제점	현재, 한국의 EK (Electrical Appliances Safety Certification) 인증 취득 절차는 다른 나라에서 국제 공통 규격에 의해 작성된 CB report 일 경우 대체하여 신청, 허가를 받는 규정이다. 그러나, KCC (Korea Communication Commission : 구MIC) 인증의 경우, 한국에 주재하는 기업 자체가 한국 정부가 지정한 인증 기관에서 테스트를 받아서 허가를 받아야만 하며, 다른 나라에서의 Test report 대체를 원칙적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아 그 비용 및 기간이 기업의 큰 부담이 되고 있다.
개선요망	<u>EK(Electrical appliances Safety Certification)인증과 마찬가지로 KCC (Korea Communication Commission : 구MIC) 인증도 국제 공통 규격에 의하여 작성한 CB report를 대체할 수 있는 절차 규정을 개선해 주기 바란다.</u>
관련기관 / 관련법령 등	<관련기관> 방송통신위원회 <관련법령 등> 전기통신기본법 제 33 조, 전파법 제 46 조
비 고	

건 명	40. 전기 전자 제품의 대여 계약 종료 시 회수 운반에 대해 【신규】
현황 / 문제점	<p>현재, 한국에서는 전기 전자 제품을 렌트계약에 따라 대여하고 대여 기간 종료 후에 대여업체로부터 해당 제품을 회수·운반할 때에는 폐기물처리법에 따라 임시 수집 운반증의 허가, 발급을 받지 않으면 운반할 수 없다.</p> <p>렌트 제품의 회수 행위는 결코 폐기물의 운반이 아니라 자기소유 제품(유가물)의 운반에 해당하는 것이며 폐기물과 동등한 취급을 받는 상업 행위가 아니다.</p>
개선요망	<p>렌트 계약에 의해 대여한 전기 전자 제품의 회수 행위는 결코 폐기물의 운반이 아니며, 앞으로도 자기소유물로서 고객에게 대여하는 유가 제품의 운반이다.</p> <p>따라서, 렌트 계약에 따른 제품을 회수할 때의 운반 행위에 대해서는 폐기물처리법상의 폐기물 운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즉, 임시수집운반증이 필요 없는 대상으로써 취급해 주기 바란다.</p>
관련기관 / 관련법령 등	<p><관련기관> 환경부(환경자원공사)</p> <p><관련법령 등>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 12 조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 6조 5 항 및 제 8 조</p>
비 고	

건 명	41. 수입 중고 전기제품의 안전 검사에 대해 【신규】
현황 / 문제점	<p>한국에서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5 조의 2(안전인증 등) 규정에 따라 안전인증 대상의 전기 용품에 해당하는 중고 전기 용품을 외국으로부터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 물량에 대해 안전 검사를 받아야만 한다.</p> <p>한편, 수입업자가 판매한 제품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After Service 를 실시할 능력이 없으므로 소비자가 직접 제조 업체에 After Service 를 요구하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수선 책임을 업체에게 강력하게 요구하고 전가하는 케이스가 많이 존재한다.</p> <p>이와 같은 경우, 본래 제조 업체가 수리 등의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지만, 미수리에 의한 화재 등의 사고 발생 방지, 브랜드 이미지의 확보 등의 관점에서 어쩔 수 없이 수리 등에 응하고 있는 실정이다.</p>
개선요망	<p><u>중고 전기 용품 수입업자에 대해서도 소비자기본법의 정신도 고려한 후에 After Service를 담당하는 능력이 있는 자에 한하여 안전 검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등을 개정하여 중고전기용품의 화재 감전 등에 의한 인체로의 위험 방지 및 제품 하자의 발생 증가에 따른 업체의 부담을 줄여 주기 바란다.</u></p>
관련기관 / 관련법령 등	<p><관련기관> 지식경제부(한국기술표준원) <관련법령 등>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5 조의 2 소비자기본법 제 19 조 (당사자의 의무)</p>
비 고	

건 명	42. 중소기업을 배려한 정부 조달 제도의 창설 【신규】
현황 / 문제점	한국에서는 정부 예산 삭감을 위해 조달청에 등록된 사무기기 제조회사를 대상으로 입찰 경쟁을 실시하여 최저 가격을 제시한 회사로부터 필요한 수량을 공급받고 있다.
개선요망	자금력이 풍부하고 중소기업회사보다 큰 폭으로 가격인하를 제시할 수 있는 일부 대기업이 공급 물량을 낙찰 받는 사례가 많이 있다. 따라서 <u>이와 같은 경쟁 입찰을 폐지하고 과거와 같이 중소기업에게 일정 비율을 할당하는 제도를 실시해 주기 바란다.</u>
관련기관 / 관련법령 등	<p><관련기관>조달청 <관련법령 등> 다수공급자 물품계약 업무처리 규정 (조달청 훈령 제1437호 2008년12월5일 시행)</p> <p>※다수공급자의 물품 계약 업무의 처리 규정 제29조(가격 등의 제안서 제출) 계약 담당 과장은 계약 물품에 대하여 수요 기관에 1회 납품 요구 대상 금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 3인 이상의 계약 상대를 대상으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가격 등, 제안서를 제출해야만 한다.</p>
비 고	일본에서는 중소기업 지원책으로써 관공서 수요의 일정 비율을 중소기업에게 할당하고 있으며, 각 부처별로 목표치를 설정, 조달 실적을 공개하고 있다.

건 명	43. 국가산업단지 기진출 기업에 의한 폐열이용을 조건으로 한 농업사업 추가 허가 【계속】
현황 / 문제점	국가 산업단지 내에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기업이 자사의 폐열 재이용을 목적으로 농업사업(농수산 제조판매 및 그에 관한 컨설팅)을 하고자 하나, 산업단지의 사업 항목에 농업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개선요망	<p>국가 산업단지에 이미 진출한 기업에 대해서는 폐열 재이용 등을 조건으로 농업 사업을 실시하는 것을 추가적으로 인정해 주기 바란다.</p> <p>폐열 재이용을 인정함으로써 국가 산업단지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본래의 사업에서 발생한 폐열을 유효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또한 추가적인 사업에 보다 이익을 낼 수 있고, 나아가서는 세금수익 증대도 기대된다.</p> <p>2008년도 건의사항에 대한 답신에는 ‘①산업단지의 용도별 확대는 산업단지의 경쟁력 향상의 관점에서 검토해야 하며, 농업의 경우는 기존 산업단지의 주력업종인 제조업·지식재산·정보통신산업 및 폐열 처리업과 관련하여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며, 오히려 공업단지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 ②농업은 사람이 먹는 농작물을 재배하는 것이므로 공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가스, 침출수) 등이 영향을 줄 수도 있다’며 수용이 곤란하다는 답변이었다.</p> <p>그러나, 본 건의내용은 당초 산업단지에 신규 참여하는 사업자 항목에 농업을 추가할 것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산업단지의 유도 목적에 맞는 업종으로 입주한 기업이 그 주력 사업을 실시함으로써 발생하는 폐열의 재이용이라는 관점에서 그 부지의 일부에서 농업을 실시하는 것을 인정해 달라는 요청사항이다. 결코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폐열 재이용 촉진산업단지로써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p> <p>또, 공장에서 배출되는 오염 물질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듯 하나, 원래 공장의 운영에는 기존의 법률에 의해 대기, 수질, 토양 오락 등의 엄격한 기준을 통과한 후에 공장의 가동을 실시하는 것이며, 환경에 대한 영향은 없다고 사료된다.</p> <p>다른 관점에서 우려사항이나 문제점이 있다면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 예를 들면 산업단지 내의 농산물 출하에 있어서는 농산품의 안전검사를 실시하는 등, 폐열 재이용사업의 촉진을 위해서라도 문제점을 제의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과제, 전향적인 답신(부지내 면적의 일정 비율 이하라면 허가하는 등)의 검토를 바란다.</p>
관련기관 / 관련법령 등	<p><관련기관> 지식경제부, 농림수산식품부</p> <p><관련법령 등>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p>
비 고	농림수산식품부의 관할인 농업센터도 폐열이용사업을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건 명	44. 소량 연구개발용 화학물질 샘플의 수입절차 확인방법의 개선 【계속/내용변경】
현황 / 문제점	<p>한국에서는 신규 화학물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환경부장관의 유해심사를 받아야만 하는데, 대통령령으로 정한 유해성심사 면제대상이라는 점에 대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p> <p>이 ‘신규화학물질 유해성 심사의 면제 확인’에 대하여는 수입 전에 화학물질관리협회에 ‘화학물질확인내역서’와 ‘화학물질유해성심사 면제확인신청서’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을 필요가 있다.</p> <p>한편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웹상에서 개별 확인신청서의 미완/완료 열람은 가능하나 신청확인별 수입량 확인은 불가능하다.</p> <p>따라서 화학물질관리협회가 확인한 수입량과 수입(신청)자가 파악하고 있는 확인수입량에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당국의 확인 시에 신청 수량을 잘못하여 허가, 입력하는 경우도 발견된다. 예: ‘123.4 톤’을 신청했으나 ‘12.34 톤’의 허가 확인이 되었다.</p>
개선요망	<p>현행 법률의 취지를 존중하고 각종 절차를 실시하고 있지만, 법령의 엄격한 준수, 신청 작업의 신속화 및 확인 내용의 재확인을 위해서 <u>유해성면제확인결과통지서를 발행할 때에는 통지서에 기존의 확인번호, 품목에 덧붙여 확인수량을 표기해 주기 바란다.</u></p>
관련기관 / 관련법령 등	<p><관련기관> 환경부, 화학물질관리협회 <관련법령 등>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 10 조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 9 조 유해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p>
비 고	

6. 생활환경개선분야

건 명	45. 생활환경 개선 【신규】
항 목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쇼핑 카트의 위생 관리 2. 오토바이의 보도 주행 3. 보행자 신호 점멸 시작 타이밍
현황 / 문제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일반 소매 할인마트에서 쇼핑 카트에 신발을 신긴 채 아이를 태우는 경우가 눈에 띄어 위생관리측면을 불안해 하는 소리가 있다. 2. 오토바이가 보도를 주행하는 일이 많이 발견된다. 또, 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는 오토바이가 많다. 3. 보행자 신호의 점멸 시작 타이밍이 빨라 언제까지 건널 수 있는지가 불명확하여 횡단보도 보행이 위험한 상태이다.
개선요망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점포의 주방, 식품 공장과 마찬가지로 직접 식품 등에 접촉할 가능성이 있는 운반기구(카고, 카트 등)에 대해서도 정부가 위생검사를 실시하고, 위생관리가 좋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 지도 등을 실시하거나 벌칙 규정을 마련하는 등의 위생관리체제를 정비해주시기 바란다. 2. <u>보행자의 안전 확보의 관점에서 더 한층 단속을 강화하고 벌칙규정을 강화(예를 들면 도로교통법상의 벌금 인상/ 벌칙 기준의 강화)해 주시기 바란다.</u> 3. 최근에는 보행자용 카운트 신호를 증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앞으로 더욱 카운트 신호 증설을 추진해 주시기 바란다.
관련기관 / 관련법령 등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식품위생법, 대규모점포에 관한 법령 2. 도로교통법
비 고	<ol style="list-style-type: none"> 3. 일본에서는 청신호 다음에 적신호로 바뀌기 전의 점멸 시간이 매우 짧다. 한국은 점멸 시간이 매우 길다. (즉, 점멸 개시는 위험 경고의 의미)